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3000-000424-01

# 농산업 육성을 위한 특화농공단지 제도개선 방안 연구

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 제 출 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농산업 육성을 위한 특화농공단지 제도개선 방안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4년 2월

연구기관명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최 경 환  
연구위원 : 김 용 렬  
전문연구원 : 허 주 녕  
연구위원 : 한 태 녕



## 요 약

---

### □ 주요 연구내용

- 이 연구의 목적은 농업의 6차산업화와 연계한 농공단지 경쟁력 강화와 농업·농촌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구체적으로 ① 농공단지 경쟁력 강화방안, ② 6차산업 활성화와 농공단지 연계방안, ③ 특화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④ 농공단지 진입도로 개설에 관한 비용 분담 방안 등이 있음.

### □ 특화농공단지 현황

- 2012년 현재 국가산업단지는 41개로 4.1%, 일반산업단지 497개로 50.0%, 도시첨단단지는 11개로 1.1%, 농공단지는 444개로 44.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그러나 면적기준으로는 국가단지는 58.3%, 일반 및 도시첨단 단지 36.5%, 농공단지 5.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2013년 현재 23개의 특화농공단지가 있고, 분양 완료된 단지는 2개, 분양중은 9개, 나머지는 분양계획 단계에 있음.
  - 그리고 특화농공단지는 6개도에 걸쳐 있고 강원도는 3개 시군, 충북은 1개 군, 충남은 4개 군, 전북은 2개 시군, 전남은 7개 군, 그리고 경북은 3개 군에 위치하고 있음.

### □ 특화농공단지의 지역농업 연계 방안

- 현재 특화농공단지는 계획 및 조성 수준에 비해 운영은 저조한 실정임.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들의 이해관계 상충 문제와 단지의 활용에 대한 구체

적인 계획 등의 부재로 특화농공단지의 활용이 미흡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특화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함.

- 특화농공단지 조성 후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 마련
-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
- 이해관계 당사자의 갈등조정을 위한 내부 협의체의 운영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및 관리 지원이 필요

- 기존 지역 특산물을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는 농공단지 업체와 단지 외 업체와의 갈등 관계를 사전에 차단하는 노력이 필요함. 특히 지역농협과 영농조합 등의 단체와 협력하여 사업을 구상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되어야 함.

#### □ 농공단지 관련 정책수요

- 농공단지 관련 정책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의 농공단지협의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121개 협의회 관계자가 응답하였음.
- 농공단지별 주력 업종에서는 일반 제조업이 108개(89.3%)로 가장 높고, 농산물 가공업이 9개(7.4%), 수산물 가공업 4개(3.3%)임.
  - 지역의 농산물과 특산물을 활용한 업체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아 업체의 경영성과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므로 지역 농산물과 특산물을 이용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집적한 단지의 조성과 운영이 필요함.
- 기존 농공단지의 입주업체는 대부분 일반 제조업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화농공단지 관련 지역특산품 활용 제조업의 비중은 낮음. 따라서 업체의 업종 제한과 해당 업체 비중 조건 등으로 전환에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음.
  - 특화농공단지 규정 조건에서 지역특화업종 비율의 ‘비중 인하’가 62명

(51.2%)으로 가장 높고, ‘현행 유지’는 44명(36.4%)로 나타남. 현행 특화 농공단지 규정요건이 완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음.

- 특화농공단지의 지역특화업종 비율의 인하 범위에서 응답자의 31.4%(38명)는 50~60% 정도를 가장 높게 선호하였고, 50% 미만도 36명(29.8%)로 나타남.
  - 일반농공단지의 특화농공단지로 전환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109명(90.1%)은 ‘전환할 의향이 없다’라고 하였음. 일반 제조업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특화업종 비율 80% 이상을 특화농공단지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규정은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음.
- 농공단지의 종합적인 관리와 관련해서 응답자의 85.1%(103명)가 ‘창구 일원화 지정’을 선호하였고, 해당 부처로 ‘산업통상자원부’가 78명(64.5%)으로 가장 높음. 고유 업무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농공단지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한 창구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수요자의 선호와 단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생산 중심의 단지에서 융·복합화된 테마형 단지의 조성이 필요함.
- 농공단지의 지정과 운영에서 가장 필요한 요소 1순위로 ‘산학연 등 협력 클러스터화 등에 인센티브 확대 지원’이 32.2%(39명)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단지 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전 심의 및 계획수립 등 농공단지 계획제도 도입’이 24.8%임. 그리고 2순위에서는 ‘단지 운영협의체의 중간지원조직화에 대한 지원’이 55.9%(38명)로 가장 높음.
- 단지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협의체의 중간지원조직화에 대한 지원 방안의 마련이 필요함. 현재 자치단체별로 조직되어 운영되는 협의체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협의체가 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조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원체계의 마련이 필요함.

## □ 농공단지 인프라 제도 개선

- 단지 조성이 오래된 경우 오폐수처리시설이 노후화되어 개·보수하거나 확장 설치해야 함. 식품 관련 제조업체의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원이 필요함.
  - 현재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국비지원 비율은 일반농어촌 50%, 추가지원농어촌 70%, 우선지원 농어촌은 100%로 되어 있음. 반면, 일반산업단지의 경우 수도권은 50%, 비수도권은 100%임.
  - 농공단지의 경우에도 국비지원 비율을 일반산업단지 수준인 100%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 기존 농공단지 내의 상수도 시설은 노후되어 있고, 관정을 통한 자체 해결 단지가 대부분이므로 식품과 음료제조업 업체가 활용하는 것은 부적합한 실정임.
  - 단체급식, 완제품의 경우 식품 안전성과 위생에 대한 높은 수준의 규제에 부합되기 위해서는 상수도 시설의 지원이 필요함.
  - 단지 운영에 필요한 필수 인프라인 상수도의 개선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하며, 광특회계 예산을 활용한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 농공단지 조성 시 진입 도로는 정부의 지원으로 건설됨. 그러나 이후 단지의 추가 조성 및 집적화 등으로 도로의 신설 또는 확·포장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나 국도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관할의 도로 개설과 확장에는 정부의 지원이 미흡함.
  - 지방자치단체 관리 도로는 지자체가 관련 비용을 부담해야 하나, 지자체의 재정수준에서는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되고 있음.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제29조(시설지원) 항목에서 기반시설 지원과 관련하여 농공단지의 집적에 따른 도로 등 기반시설의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함.



- 기반시설 지원대상에서 추가적으로 단일 단지의 규모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규정한 근거에 추가적으로 집적된 규모가 30만 제곱미터 이상 농공단지 관련 항목도 특례조항으로 정비가 되어야 함.

## □ 특화농공단지의 비전과 기본 방향 및 발전방안

- 비전: 1차·2차·3차 산업과 문화가 융·복합화 된 창조적 산업공간화
- 기본 방향
  - 1차·2차·3차 산업의 융·복합화 공간
  - 활력 넘치는 공간을 위한 체계적인 거버넌스 구축
  -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혁신역량 올리기
- 1차·2차·3차 산업의 융·복합화 공간을 위한 과제
  - 특화농공단지 내 입주규제 완화를 통한 6차산업화 단지 확대
  - 수급관리와 특화의 체계화를 위한 지역특화농공단지 계획제도 도입
- 체계적인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과제
  - 특화농공단지의 관리 컨트롤 타워로 농림축산식품부 역할 강화
  - 관리업무를 전담할 위탁 전문관리기관 지정
  - 농공단지협의회 중간지원조직화를 통한 거버넌스 강화
- 네트워크를 통한 혁신역량 강화 과제
  - 산·학·관·연 협력클러스터를 통한 역량강화
  - 지역 거버넌스 활용 지자체 독자 운영 강화



## ABSTRACT

## A study on Improving the Specialized Rural-Industrial Park for Development of Agricultural Industry

Due to the rapid urba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since the 1980s, Rural regions have faced a problem that have been relatively depressed than urban. For the income increase of residents in agricultural and fishery regions and the balanced development of urban-agricultural regions by creating the jobs in the rural areas, the project of rural-industrial park(RIP) that the industrial complexes have been constructed in the rural areas has been promoted.

But RIP is presenting diverse problems under the rapid chang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nditions. We need a comprehensive study on the maintenance-repair of old rural-industrial park and the collaboration with local agricultur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the methodology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RIP and activate the agriculture-rural in connection with 6th industrialization of agriculture. More concretely, ① the plan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RIP, ② the plan to connect 6th industrial activation and RIP, ③ the plan to activate the specialized RIP, and ④ the plan to share the costs for constructing the entrance roads into the RIP.

As the main results of study, first the following efforts are necessary for the activation of specialized RIP: ① A concrete road map is necessary for the operation of the specialized RIP after their construction, ② The construction of network is needed to use sufficiently abilities of the local governments, ③ The operation of internal consultative organization is important to adjust the conflicts among interest groups, ④ The administrative and managerial support from local government are necessary.

Second, to strengthen the connection between RIP and 6th industrialization, ① RIPs built in the future need to have the form of integrated or complicated theme-type complex rather than the production-oriented park to meet the customers' preference and the continuous development of park, and ② in connection with the park operation it is necessary to plan the intermediate supporting agency for operational

consulting organization.

Finally, the activation of park should be promoted by removing the irrational elements in the present detailed supporting conditions for the complex support and diverse regulations. It is also necessary to provide the infrastructure for the formation of large-scaled complexes through the cumulation of RIP as well as to newly enact the special provisions about the appointment of industry sites.

Researchers: Kyeong-Hwan Choi, Yong-Lyoul Kim, Joo-Nyung Heo and  
Tae-Nyoung Han

Research period: 2013. 8. - 2014. 2.

E-mail address: kyeong@krei.re.kr

## 차 례

---

### 제1장 서 론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
- 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 3
- 3. 연구 방법 ..... 5

### 제2장 농공단지 정책의 변화 추이

- 1. 농공단지 정책 추진 배경 ..... 6
- 2. 농공단지 정책 추이 ..... 7
- 3. 농공단지 관련 사업 ..... 14

### 제3장 특화농공단지 실태

- 1. 산업단지의 유형 구분 ..... 26
- 2. 산업단지 현황 ..... 31
- 3. 특화농공단지 현황 ..... 38

### 제4장 농공단지 관련 정책수요 분석

- 1. 조사 개요 ..... 52
- 2. 농공단지 운영 실태 ..... 53
- 3. 정책수요 ..... 62

### 제5장 노후 농공단지 개·보수 제도 개선

- 1. 노후 농공단지의 문제점 ..... 64
- 2. 노후 농공단지 인프라 제도 개선 ..... 71

**제6장 특화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1. 특화농공단지 비전 및 기본 방향 .....	84
2. 특화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	85
부록 1. 영주시 농공단지 간 연결도로 개설 관련 검토사항 .....	112
2. 인접도로 개설 설계 및 비용 산정 .....	114
3.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사업지침 .....	123
4.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관련 설문조사표 .....	145
참고 문헌 .....	150

## 표 차 례

---

### 제2장

표 2- 1. 농공단지 개발사업의 단계별 주요 추진 내용 .....	11
---------------------------------------	----

### 제3장

표 3- 1. 산업단지 유형 구분 .....	27
표 3- 2. 산업단지 지정·개정 및 관리체계 .....	29
표 3- 3. 산업단지 지원제도 .....	30
표 3- 4. 산업단지 및 관리현황(2012) .....	31
표 3- 5. 산업단지 입주 및 가동업체 현황(2012) .....	32
표 3- 6. 산업단지 생산 및 수출실적(2012) .....	33
표 3- 7. 산업단지에서 농공단지의 역할 .....	36
표 3- 8. 특화농공단지 조성 현황 .....	39
표 3- 9. 특화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 .....	44
표 3-10. 특화농공단지 고용창출 현황 .....	45
표 3-11. 특화농공단지 비중 .....	47

### 제4장

표 4- 1. 조사 설계 .....	52
표 4- 2. 농공단지별 업체수 .....	53
표 4- 3. 휴업 업체수 .....	54
표 4- 4. 폐업 업체수 .....	54
표 4- 5. 운영업체 상태 .....	54
표 4- 6. 운영업체 주력 업종 현황 .....	55
표 4- 7. 특화농공단지 인식 .....	56

표 4- 8.	특화농공단지 지정요건 의향 .....	56
표 4- 9.	특화농공단지 기준 완화 이유 .....	57
표 4-10.	특화농공단지 기준 완화 범위 .....	58
표 4-11.	특화농공단지 전환 필요성 .....	58
표 4-12.	농공단지 운영 담당 부처 의향 .....	58
표 4-13.	농공단지 운영 창구 일원화 의향 .....	59
표 4-14.	관리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농공단지 활성화 기여도 .....	59
표 4-15.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운영방안 .....	60
표 4-16.	농공단지 지정과 운영에서 가장 필요한 요소 .....	61

## 제5장

표 5- 1.	노후 농공단지 문제점 .....	65
표 5- 2.	사업대상지역 주변 교통량 현황 .....	76
표 5- 3.	장수면, 문수면 일원 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 .....	77

## 제6장

표 6- 1.	지역특화농공단지에 대한 관리주체로서 중앙부처 비교 .....	101
표 6- 2.	산업단지 관리주체 .....	103
표 6- 3.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주요 사업 .....	109



## 그림 차례

---

### 제3장

- 그림 3-1. 산업단지 유형별 생산액 추이 ..... 34  
그림 3-2. 산업단지별 수출액 추이 ..... 34

### 제5장

- 그림 5-1. 영주시 농공단지 인접도로 개설 위치도 ..... 82



# 제 1 장

---

## 서 론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농어촌 지역에 공단을 조성하여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고용 창출을 통한 소득원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농공단지사업이 추진됨.
  - 본 사업은 농어민 소득 증대 및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983년부터 단지 조성비를 국비로 지원하고 있음.
  
- 1980년대 급속한 도시화·산업화로 야기된 농어촌지역의 침체 문제를 해소하고, 주민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농어가 소득증대와 도·농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추진된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농공단지가 지니고 있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됨(이동필 외(a), 2010).
  - 산업용지 제공을 통해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의 필수조건 마련
  - 국토의 불균형 발전 완화 및 성장 잠재력 확충에 기여
  -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증대 기회 제공
  -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그러나 농공단지 조성 후 30여 년이 경과하면서 국내외 여건이 변화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노출되고 있음.
  - 불리한 입지 조건, 단지의 협소 및 입주기업의 영세성 등으로 활력이 저하되고 있음.
- (지역 내) 농촌지역 인구 과소화, 고령화 및 경제력 위축
  - 2004년부터 국토의 균형발전 및 농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란 차원에서 신활력사업과 향토산업육성사업을 실시하고, 이후 농촌활력증진사업을 거쳐 향토산업육성사업과 포괄보조사업 등을 중심으로 농촌산업정책은 이어져 왔으나 농공단지와의 연계는 미흡함.
- (정책 환경) 농촌산업의 6차산업화 추진
  - 농식품 산업에 창조경제를 접목한 6차산업 활성화의 일환으로 기반시설 지원 등 특화농공단지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시장환경) 소비자 트렌드의 변화
  - 개방 확대에 의한 비우호적 환경 속에서 소비자 트렌드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이 연구의 목적은 농업의 6차산업화와 연계한 농공단지 경쟁력 강화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농업·농촌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는 것임.
- 구체적으로는
  - 농공단지 경쟁력 강화방안
  - 6차산업 활성화와 농공단지 연계방안
  - 특화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 농공단지 진입도로 개설에 관한 비용 분담 방안 등

## 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 2.1. 연구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검토 범위: 1984년~2012년
  - 계획 범위: 2013년~2017년(향후 5년)
- 공간적 범위
  - 2013년 현재 가동 중인 농공단지
  - 농공단지가 조성된 지방자치단체
- 대상 범위
  - 일반농공단지: 경쟁력 강화 및 노후시설 개·보수
  - 특화농공단지: 특화농공단지 활성화

### 2.2. 연구내용

- 농공단지 정책과 특화농공단지 실태
  - 시대별 농공단지 정책 추이
  - 일반 산업단지 및 특화농공단지 실태
- 농공단지 관련 사업(정책)
  - 6차산업화, 향토산업육성사업
  -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시범사업,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 사업

- 지역특화발전특구 등
  
- 농공단지 활성화 관련 설문조사
  - 농공단지 관리 방안
  - 6차산업화 연계 방안
  - 특화농공단지 활성화 관련
  
- 기존 농공단지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노후 농공단지 운영의 문제점 분석
  - 농공단지의 개·보수 지원 및 제도 개선 방안
  - 농공단지 사업의 효율성 제고 방안
  
- 특화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 특화농공단지의 비전과 기본방향 제시
  - 특화농공단지의 활성화 방안
    - 기존 농공단지 사례로 살펴본 융·복합화 과제
    - 특화농공단지 계획제도 도입 방안
    - 농공단지협의회 중간지원조직화 방안

### 3. 연구 방법

- 문헌 및 자료 검토
  - 이론적 배경 및 통계자료 등
  
- 연구자문회의 개최
  - 정부 담당자, 학계 및 관련 연구기관 전문가, 입주기업 대표, (사)전국농공단지연합회 대표자, 지자체 담당 공무원 등의 의견 수렴
  
- 협동연구
  - 농공단지 진입도로 개설 관련 협동연구 추진(한국농어촌공사)
  
- 설문조사를 통한 관련 당사자 의견 수렴
  - 특화농공단지 활성화, 기존 농공단지 전환 방안 및 6차산업화 집적 방안 등에 대한 의견수렴과 과제 발굴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
  - 조사 대상: 농공단지협의회 관계자(광역, 시·군)
  - 조사 방법: 구조화된 조사표를 통한 우편조사 및 이메일조사
  
- 농공단지 운영 실태 사례조사 및 현지간담회 개최
  - 농공단지사업 전반에 대한 심층조사를 위해 현지 방문 조사, 입주기업 대표, (사)전국농공단지연합회 및 광역협의회의 대표자 및 관계자, 지자체 담당자, 대학교수 등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각계 의견을 수렴

## 제 2 장

---

### 농공단지 정책의 변화 추이

#### 1. 농공단지 정책 추진 배경<sup>1</sup>

- 1960년대부터 시작되어 1980년대까지 수도권과 일부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한국의 급속한 산업화 정책은 경제 선진국의 기틀 마련이라는 성과를 창출하였음.
  - 이러한 산업화 정책은 산업화에서 물리적으로 소외된 농어촌 지역이 더욱 급속한 쇠락을 경험
  - 급속한 산업화로 발생한 소득감소 문제와 일자리 부족 등 농어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농공단지 사업이 등장
- 1980년대 급속한 산업화로 야기된 농어촌 지역의 다양한 문제<sup>2</sup>를 해소하고 산업기반시설의 고른 입지를 통해 균형적인 산업화를 도모하기 위해 농공단지를 조성함.

---

1 최경환 외(2012, p.11)에서 발췌, 정리하였음.

2 1960, 70년대의 공업우선 정책으로 인해 농·공 간 불균형이 심화됨에 따라 농가소득 증대가 국가적 관심사로 대두되었으며, 농외소득원 확보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시도되었음.



-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농어촌 경제의 침체를 타개하기 위한 근본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농업·농촌에 기반한 산업의 특화, 산업기반시설의 유지 및 확대를 통한 인구유출 방지와 인구유입 여건 조성 등을 목표로 하였음.
- 농공단지는 산업단지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으나 농업·농촌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 농촌지역의 산업적 자생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일반산업단지와는 차별성을 지님.

## 2. 농공단지 정책 추이<sup>3</sup>

### 2.1. 시기별 농공단지 정책

-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시작된 1980년대에는 입지 조건이 양호한 지방 중소 도시를 중심으로 농촌지역 공업을 집단화하여 주변 농촌지역과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하였음(이동필 외(a), 2010, p.105).
  - 이를 위해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을 제정하고 농외소득원개발기획단을 설치함.
- 1990년대에는 중앙정부가 주관하던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지자체에 이관하고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을 확대하였음.
  - 규제 완화 및 각종 자금지원 조건 등을 개선함.
- 2000년대에는 지역전략사업과 연계한 농공단지 구조 고도화를 위한 전문단지 및 지역특화산업단지를 신설하여 산업 환경변화에 따른 농공단지 지원

---

<sup>3</sup> 이동필 외(2010(a))와 최경환 외(2012)를 토대로 재정리함.

수단을 다양화하였음.

- 2010년대 들어서는 농공단지 수요가 어느 정도 충족되었다는 관점에서 신규 농공단지 조성은 특화농공단지에 한정하고, 기존 노후 농공단지의 개·보수 및 다양한 지원을 통한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을 정부 합동 또는 관련 부처별로 강구하였음.
  - 2007년 12월 산업자원부(현 산업통상자원부)는 농공단지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을 발표함.
  - 농림수산식품부는 농공단지 사업을 제2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2010~2014)에 포함시킴.
  - 농공단지 육성 업무의 공조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2011년 2월 22일 농림수산식품부(현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는 MOU를 체결하였음.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농어촌 산업정책 추진지원단」, 지역 차원에서는 「농어촌 자원 산업화 TF」를 구성하여 중점추진과제를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이후 별다른 추진사항은 없음.
  - 2011년 6월 28일 국무총리실은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농공단지 내실화 방안을 발표함. 신규 단지는 지자체가 지역의 수요를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중앙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특화단지를 중점적으로 지원하며 향토산업과 연계를 강화하기로 함.
- 농공단지 사업과 관련된 정책의 추이를 연대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2.1.1. 1960년대

- 1967년 농촌지역의 농외소득원 확보와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유희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 농가부업단지 조성정책을 추진함.
  - 동 정책은 농외취업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처음으로 실시된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그 성과는 애초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 2.1.2. 1970년대

- 농외소득 증대를 통해 도·농간 소득 격차를 줄이고, 공장의 지방분산과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책을 추진함.
- 지역분산을 강조하여 사회간접자본이 열악한 지역에 기업(공장)을 입지시킴으로써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판로 확보가 미흡하다는 한계점을 노출함.
  - 새마을공장 건설 사업 및 농어가 부업단지 조성 사업: 농어촌특산단지 조성을 중심으로 한 농수산부의 사업
  - 공업개발장려지구 조성사업: 지방공업단지 조성을 위한 건설부의 사업
  - 공업유치지구 조성사업: 지방의 공업유치지구를 조성하여 지원하기 위한 상공부의 사업

### 2.1.3. 1980년대

-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하여 농촌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입지조건이 양호한 중소규모의 공단을 조성하여 농촌공업을 집단화시키고, 주변 농촌지역과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제정 및 농외소득원개발기획단 설치

### 2.1.4. 1990년대

- 중앙정부가 주관하던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지자체에 이관하고 농공단지 활성화 위한 지원정책을 확대함.
  - 규제 완화 및 각종 자금지원 조건 등을 개선하는 사업 및 지원의 확대 실시(농공단지 활성화 대책, 1997년)

### 2.1.5. 2000년대

-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농공단지 구조 고도화를 위한 전문단지 및 지역특화산업단지 유형을 신설함.
  - 입지구제 완화 등의 제도 개선, 자율적인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지원, 입주 기업체에 대한 기술 및 경영 지원 확대 등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농공단지 지원수단의 다양화
  - 입지 규제 완화를 통한 신규단지 조성 확대, 농공단지 관리의 효율성 제고방안, 입주기업 지원 강화, 향토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하여 시행

### 2.1.6. 2010년대

- 농공단지의 신규 조성 시 일반농공단지와 전문농공단지 지원을 중단하고 특화농공단지만 지원하게 됨에 따라 지역농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함.
  - 신규 조성 시 일반·전문농공단지 지원을 중단하고 특화농공단지 기준 강화, 단지 조성비 지원요건 강화, 노후단지 관리 및 지원 강화, 분양 및 가동현황 등 단지 현황 관리 강화를 시도함.
  - 그리고 계획입지 투자 활성화를 위한 논의를 산업단지, 농공단지, 경제자유구역, 지역특구, 기업도시를 대상으로 시작함. 그러나 최종 계획입지 투자 활성화 방안에는 농공단지가 제외됨.
  - 농공단지 육성 업무의 공조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2011년 2월 22일 농림수산물부(현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는 MOU를 체결하였음.

표 2-1. 농공단지 개발사업의 단계별 주요 추진 내용

구분	시기	주요 추진 내용
준비단계 (1982~1985)	1981. 11	○ 경제기획원에 농의소득개발기획단 설치
	1983. 12	○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제정, 공포
	1984. 10	○ 도별 1개씩 전국 7개 시범농공단지 지정
확산단계 (1986~1990)	1986. 3	○ 농어촌종합개발계획 수립(2001년까지 100개 농공단지 지정계획)
	1987. 9	○ 일반 농어촌지역 외에 추가 지원 농어촌지역 구분 ○ 1989년 말 우선지원 농어촌지역 추가
	1990. 1	○ 농공단지 지정 승인권 위임(중앙소득원개발심의위-도지사)
조정단계 (1991~2000)	1991	○ 근거법 대체(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1996	○ 농공단지 정책 개편 - 입주기업 사후관리 강화, 환매조건부 특약 등기 개선 - 신규 농공단지 지정 요건 강화 - 개발 연면적 한도 확대 및 기존 농공단지 확장 허용 - 농공단지 주무부서 조정(농림부 → 상공자원부) ○ 농공단지 정책 개편 - 공장 신·증설 시 대기 및 수질관련 입주업체 제한 완화 - 입주기업 경영 지원 강화 및 저렴한 공장용지 공급
재조정 단계 (2001~2010)	2001	○ 전문단지 및 지역특화산업단지 신설
	2004. 7	○ 산업자원부: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 - 입지선정기준 조정 - 지역특화단지 지정기준 완화 및 조성비 지원액 확대
	2007. 12	○ 산업자원부: 추가적인 농공단지 활성화 정책 - 혁신클러스터(농공단지 클러스터사업) ⇒ 2011년부터 중단
질적 향상 단계 (2011~현재)	2010. 2 2011. 5	○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관련 정부합동 또는 부처별 대책 강구 ○ 농공단지 업무강화 부처별 MOU 체결 ○ 국무총리실 외 정부 합동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 - 신규 조성 시 일반·전문농공단지 지원 중단 - 특화농공단지 기준 강화(80% 이상), 단지 조성비 지원요건 강화 - 노후단지 공공시설 정비를 위한 국비지원 근거 마련 - 분양 및 가동현황 등 단지 현황관리 강화
	2012. 9	○ 관계 부처 합동: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 지자체 등의 건의 개선과제 수집, 주요 개선 과제로 56개 선정
	2013	○ 특화농공단지만 신규 지원 시작 ○ 기획재정부 주관 합동회의: 계획입지 투자 활성화 방안 모색 - 산업단지, 농공단지, 경제자유구역, 지역특구, 기업도시 논의 - 최종 계획입지 투자 활성화 방안에 농공단지 제외

자료: 최경환 외(2012)를 토대로 재 작성

## 2.2. 농공단지 정책 환경의 변화

### 2.2.1. 농공단지사업의 성과와 한계

- 농어촌지역의 농외소득원 개발을 목적으로 추진된 농공단지 정책은 농어촌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일정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됨(이동필 외(a), 2010, p.111).
  - 산업용지 제공을 통해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의 필수 조건을 마련
  - 농어촌지역 성장 잠재력을 향상시키고 국토 균형발전에 기여
  -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 증대 기회 제공
- 농공단지 정책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정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30여 년을 경과하면서 정책의 문제점과 한계가 노출되고 있음.
  - 가장 큰 문제점은 입지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점임. 농공단지는 수도권을 제외한 농어촌지역에 입지시킨다는 방향에서 조성되어왔기 때문에 산업 입지론 관점에서 보면 농공단지의 태생적 한계라고 할 수 있음.
  - 사업 초기에 조성된 농공단지는 전반적으로 노후화되어 있으며, 단지규모도 협소하게 자리 잡아 입주기업의 성장에 따른 규모 확대가 용이하지 못함.
  - 그동안 농공단지 신규 조성에 치중하는데 비해 조성된 단지의 활성화나 내실화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흡함.
  - 조성된 농공단지의 경우 분양을 최우선으로 하였기 때문에 입주기업의 업종이 상이하여 입주기업 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농공단지과 지역산업과의 연계도 미흡하였음.

### 2.2.2. 농공단지사업의 여건 변화

-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시작한 1980년대는 급속한 경제발전 과정에서 상대적

으로 열악했던 농어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농외 소득원 개발이 필요했으며, 농촌 공업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여 농어촌의 유희 노동력을 활용하여 농어가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었음.

- 그러나 30여 년이 경과하면서 농공단지 정책 환경은 크게 변화하였으며, 이후의 농공단지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데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농공단지가 농외소득원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황임. 이는 농공단지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농가의 여건 변화에 기인하는 것임.
  - 농가인구의 절대적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농업인력도 부족한 실정이어서 농외부문에 취업할 인력이 없음.
- 둘째, 도로의 신설 및 확·포장 등으로 교통 여건이 좋아지면서 국가산업단지와 지방산업단지는 물론 일반산업단지가 농어촌지역에 입지함으로써 농공단지의 상대적 유리성이 축소되거나 소멸되었음.
  - 저렴한 분양가의 장점이 약화됨.
  - 일반산업단지의 입지로 인해 농공단지에 대한 이미지는 상대적으로 악화되었음.
  - 동일한 조건이라면 농공단지가 아닌 다른 산업단지에 근무하기를 선호하여 인력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셋째, 교통·통신의 발달은 생활권은 물론 경제권의 광역화를 촉진하고 있음.
  - 원료, 인력, 판로 등의 확보를 위해서는 보다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야 하나, 대부분 영세업체로 구성된 농공단지는 여타 산업단지에 비해 경쟁력이 약함.
- 넷째, 정부 정책은 개별 농어의 소득 증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지역 특산물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지

역산업정책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음.

-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정책은 지역 특산물을 선택,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농공단지 입주 업체는 지역과의 연계성이 저조한 실정임.

### 3. 농공단지 관련 사업

- 농공단지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역과의 연계가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농어촌지역 산업 활성화와 관련된 정책(사업)과의 연계가 필요함. 농공단지와 관련이 있는 부처별 정책(사업)들은 다음 몇 가지를 들 수 있음.

#### 3.1. 농공단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업: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sup>4</sup>(포괄보조사업)

##### 3.1.1. 개요

-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각 시·도에서 주관하며,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1차·2차·3차 복합산업화를 촉진하고, 창업 및 기업유치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의 경제활동 다각화와 소득·고용기회 증대 도모를 목적으로 함.

---

<sup>4</sup> 관련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록 3을 참조



- 지원대상은 농업인, 생산자단체, 농산물가공업체, 체험·휴양마을사업자, 연구단체 등이며, 시행기관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규정됨.
  - 농공단지 조성의 경우 특별·광역시, 수도권 지역 시·군·구는 제외됨(「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의함).
  
- 지원내용은 농촌산업 주체 역량 강화 및 혁신 체계 구축, R&D 및 컨설팅 등의 지원과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것과 농촌자원 복합산업화를 위한 생산·유통, 제조·가공, 체험·전시기반 구축과 같은 하드웨어적인 것임.
  - 농촌산업 주체 역량강화 및 혁신체계 구축
    - 농촌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RIS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원
    - 농업인, 소상공인, 주민 대상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 농축산물 공동마케팅 조직 구축 프로그램 개발·운영
    - 소규모 창업 교육 및 창업기업보육 지원
    -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지역리더 양성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 R&D 및 컨설팅 등 지원 강화
    - 농촌자원 산업화와 관련된 대학·민간 연구소 등의 R&D네트워크 구축 지원
    - 향토 자원 발굴 및 산업화 방안 연구 등
    - 지리적 표시, 상품 특허 등 지적재산권 획득 지원 등
    - 우수 향토기업의 상품 개발 및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R&D·컨설팅 지원
  - 농촌자원복합산업화를 위한 생산·유통 기반 구축
    - 복합산업화와 연계하여 지역 농업 생산·유통 혁신 및 효율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 향토자원 활용형 제조가공업체·식품업체의 설비 현대화 등 지원
    - 로컬푸드 등 지역 농축산물·식품 소비기반 확충 프로그램 지원
    - 향토 상품 수출 및 마케팅
  - 농촌기업 유치 및 향토기업 집적화 기반조성
    - 특화농공단지 부지 조성 및 노후농공단지 시설 개·보수 지원

- 농공단지 입주기업 대상 기술정보·마케팅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 농촌형 체험·휴양 비즈니스 기반 구축
  - 체험휴양 프로그램 운영
  - 농촌테마공원 등 거점 체험·휴양기반 구축
  - 지역단위 체험·휴양 패키지 프로그램 개발 및 마케팅
  - 농촌 관광 전문가 육성 및 전문가 컨설팅 지원
- 지원조건은 국비 50%, 지방비 50%(자부담 포함)
  - 다만,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른 농공단지 부지 조성비 지원사업(농공단지조성사업)은 정액 지원
- 시·도 자율편성사업으로서, 포괄보조금 사업을 활용하여 해당 지출한도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정함.
  - 총 사업비 30억 원 이상 토목·건축사업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전 사업성 검토를 필요로 함.

### 3.1.2. 농공단지 관련

- 농촌자원복합화사업에서 농공단지와 관련이 있는 부분은 특화농공단지 조성 및 노후단지 개·보수 지원임.
  - 부지 조성비는 2013년부터 특화농공단지만 지원(일반 및 전문 농공단지 조성 시 국비 지원 제외)
  - 농공단지 조성의 경우 특별·광역시, 수도권 지역 시·군·구는 제외됨(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의함).
  - 농공단지 입주기업 대상 기술정보·마케팅 지원프로그램 운영 등
- 지원내용
  - 농공단지 부지 조성 시 용지 취득비, 단지 시공비, 진입로·전력·통신·용

- 수 등 부대 시설비를 지원함.
  - 단지 내 공동이용시설, 부대시설 등 노후화 시설물 개·보수비를 위해서는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13조 제2항 별표 2의 지원시설 중 노후화되어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에 근거하여 지원함.
  - 농공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마케팅 관련 교육 및 컨설팅 비용을 지원함.
- 시·군·구는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가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인 농공단지 지정은 사업신청 전(前)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함(행정절차 미이행 사업은 사업신청 불가).
- 기본계획 수립(농어촌정비법 등 사업시행 관련 법령), 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법), 문화재 지표조사(문화재보호법) 등

## 3.2. 농공단지와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업

### 3.2.1. 농림축산식품부

#### 가. 6차산업화 대책

- ① 기본방향
- 지역공동체 중심의 6차산업화 모델을 확산함.
  - 농촌의 부족한 인적 역량을 귀농·귀촌, 재능기부 등 외부 전문가로 보완함.
  - 마을의 발전단계에 따른 차별화된 지원 체계를 구축함.
- ② 세부전략
- 사업초기단계(창업 및 판매 지원체계 구축)
    - 주민 주도의 현장포럼을 통한 마을 사업계획 수립
    -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를 통한 사업화, 시제품 생산 지원

- 창업 시 필요한 정보나 경영노하우를 전수해 주기 위해 은퇴전문가 고문 제도 도입
  - 6차산업화 창업자금 지원
- 성장단계
- 농업을 통한 6차산업화 성장단계에서의 지원내용은 6차산업화 사업자 인증, R&D 지원, 자금지원, 판매 및 수출지원, 모태펀드, 판로개척 및 통합마케팅 등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음.
  - 6차산업화 사업자 인증: 성장 가능성이 있는 경영체를 6차산업화 사업자로 인증해서 2017년 까지 1천 개를 인증하는 것임.
  - R&D 지원: 기술사업화(R&BD) 지원 확대 및 기술뱅크를 구축하여 새로운 제품 개발과 기술 거래 및 이전을 촉진
  - 자금지원: 자본 조달 및 확충을 위해 모태(특수목적)펀드를 활용, 창투사의 투자 확대를 위해 6차산업화 박람회와 투자 설명회를 활용
  - 판매 및 수출 지원: 농협 등에 전문매장, 해외 안테나숍을 설치
  - 민·관 합작 방식의 6차산업화 모태펀드 조성: 6차산업화에 기여하는 경영체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민·관합작 방식의 펀드 결성
  - 판로개척 및 통합마케팅 지원: 6차산업화 경영체 생산제품의 전시·홍보와 생산품 판로확보를 위해 지원, 소비자 유통 품평회와 6차산업 박람회, 6차산업 경진대회 지원
- 지역 네트워킹 강화
- 6차산업화 활성화를 위한 전제 요건인 지역네트워크 강화에서는 6차산업화 주체간 연대 촉진, 지역 컨소시엄 사업단 구성 지원, 6차산업화 지구 조성, 활용자원 다양화, 광역중간지원조직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 6차산업화 주체 간 연대를 촉진: 지역 농업인, 생산자단체, 제조·가공업체, 체험·관광마을 등이 참여하는 6차산업화 협의체를 구성하여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6차산업화 사업자의 공동 홍보·마케팅·판매·품질 관리 등의 촉진을 위해 6차산업화 공동사업도 지원함으로써 주체 간 연대를 강화

- 지역 컨소시엄 사업단 구성 지원: 1차 농산물이 6차산업화된 품목을 중심으로 농업인, 제조·가공업체, 체험마을 등이 참여하는 6차산업 협의체를 중심으로 하여 지역 컨소시엄 사업단을 구성. 이를 통해 공동상표 및 디자인 개발, 공동마케팅, 판매 및 수출, 품질관리 촉진. 2014년에 공모를 통해 5개소를 추진 계획
- 6차산업화 지구 조성: 지역자원이 집적화된 곳을 6차산업화 지구로 지정해 지역농업의 허브로 구축. 지정된 지구에 대해서는 공동 제조·판매·체험 등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 공동연구개발 및 품질관리에 대한 지원, 참여자 교육 등을 지원하며, 2014년에 공모를 통해 3개소를 시범적으로 추진.
- 활용자원의 다양화: 우선, 승마시설, 힐링 농장, 이벤트 농장 확대 및 양조장의 복합체험장화 추진. 또한 지역 농산물·문화와 연계된 향토음식·전통제품의 관광상품화를 촉진함으로써 지역 자원을 충분히 활용
- 광역중간지원조직 지정 및 운영: 광역(도) 단위로 총괄조직을 지정하여, 관련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역 내 네트워크도 강화하고, 6차산업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여러 가지 지원 서비스 제공

#### 나. 2013-201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 ○ 주요 농정과제 실천계획

-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 기술농업 및 6차산업화로 농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 맞춤형 농가소득 및 경영 안정
- 자조·자립·협력을 통한 농촌 삶의 질 향상
- 스마트 농정체계 구축

- 농공단지와 관련된 실천계획은 ‘기술농업 및 6차산업화로 농식품산업 경쟁력 강화’임. 이 실천계획을 위한 로드맵에서 농업 전후방 연관산업 육성을 위해 50개 소의 지역특화농공단지를 2017년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 6차산업 지구제 도입과 관련하여 단순 제조·가공업 위주의 농공단지를 지역의 향토자원을 활용, 체험·관광과 연계하는 6차산업화 중심지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임.

#### 다. 향토산업육성사업

- 향토산업육성사업은 농어촌지역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향토자원을 발굴하여 다양한 1차·2차·3차 산업이 연계된 복합산업으로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득기반을 확충하고, 산·학·연·관 등 사업주체간 유기적인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농어촌지역의 사업역량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사업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함.
- 지원조건은 국비 50%, 지방비·자부담 50%로, 3년간 총사업비는 30억 원 규모임.
- 지원대상은 농어업인조직, 향토기업, 생산자단체, 연구단체 등이며, 사업시행주체는 시·도지사, 시장·군수로 규정함.
- 지원내용은 하드웨어적인 사업과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으로 구분됨.
  - 하드웨어적인 사업들은 제품 개발과 농수산물 생산·유통 기반구축 지원, 농수산물 제조·가공 지원, 체험·전시 지원, 농촌체험·관광 지원, 농공단지 조성 및 정비 지원 등의 시설 지원임.
  - 소프트웨어적인 사업들은 홍보·마케팅, 디자인·브랜드 개발, 제품 및 기술 개발, 지적 재산권 등록, 사업추진단 전담인력 인건비 등 운영비, 역량 강화 등 교육시행, 네트워크 구축 등임.

## 라.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은 지역농식품 주체(산·학·연·관)들의 역량을 집중하여 특화된 농산물의 생산·유통·가공·판매 등을 통해 지역농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핵심기술과 경영이 조화롭게 융합된 시스템을 구축하여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는 전략임. 산·학·연·관 주체들이 역량을 집중하여 지역 가용자원(지역 특화품목)을 통합·유기적으로 활용하여 농촌 활성화와 농어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됨.
- 지원내용은 혁신체계 구축 네트워크 분야와 산업화 및 마케팅 분야로 나누어짐.
  - 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 분야는 농가교육, 벤치마킹, 사업단 운영비, 전담인력비용, 사업단 컨설팅 비용 등을 지원함.
  - 산업화 및 마케팅 분야는 브랜드 개발 및 관리, R&D지원, 홍보 및 마케팅 지원, 가공시설 등을 지원함.
-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단에서 주관하며, 시행절차는 사업신청을 원하는 법인이나 단체가 산·학·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면 해당 지자체의 선발과정을 거쳐 지자체별 사업계획을 농식품부에 제출하고, 농식품부가 전문평가단을 구성하여 선정하는 체계로 운영하고 있음.
- 사업 규모 및 기간은 시범사업(2005~) 20개 소, 본사업(2008~) 22개 소, 광역사업(2009~) 12개 소가 운영되며, 기본 3년/적년제로 시행, 평가 후 1~2년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함. 지원조건은 국비 50%, 지방비 50%로 구성됨.

### 3.2.2. 농촌진흥청

#### 가.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시범사업

- 국내 원료를 기반으로 한 창업활동 지원으로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 증진 및 농업인의 경제활동 역량을 향상시키고, 소규모 창업사업의 안정적인 정착 및 경쟁력 있는 상품 개발을 지원함.
- 지원대상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농업인 공동 참여자임.
  - 소자본으로 농업인 특유의 숨씨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농촌자원을 이용한 소득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임.
- 지원금액은 개소당 1억 원이며, 국비와 지방비 각각 50%임.
- 지원내용은 첫째, 제품의 가공·생산·상품화에 필요한 작업장, 시설 설치 등 기반 조성. 둘째, 경쟁력 향상에 필요한 포장 및 유통 개선, 상표등록 및 출원,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제작, 홍보강화 등. 셋째, 위생적인 가공사업장 설계, 건축, 시설, 제품개발 등을 위한 컨설팅. 넷째, 기술습득을 위한 교육 및 우수지역 벤치마킹 등에 대해 지원함.

#### 나.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

-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생산, 가공, 유통·외식·체험 산업을 추진코자 할 때 융·복합기술과 기반 조성을 지원함.
- 지원대상은 농촌마을, 작목반, 농업인단체 등 농업·농촌관련 공동체임.
  - 사업추진 역량을 보유하고 사업을 통한 수익창출과 공동체 회복 의지가 강한 15인 이상 참여 공동체로 하고 있음.



- 지원 금액은 개소당 10억 원씩 2년간 지원하며, 국비와 지방비를 각각 50% 지원함.
  - 지원 한도액은 개소당 10억 원으로 1년차에 5억 원, 2년차에 5억 원을 지원함.
- 지원용도로는 첫째, 조직화, 경영체 간 연계 및 운영 시스템 구축. 둘째, 유형별 사업 다각화 기반조성(개발기술과 지역자원 연계). 셋째, 사업 참여자 역량개발임.

#### **다.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 시범사업**

- 농업기술센터를 지역농산물 가공기술의 전진기지로 육성하고자 함. 농산물 가공기술의 효율적 이전, 보급·확산과 공동기기 지원으로 농업인의 농외소득활동을 지원함.
- 지원 금액은 개소당 10억 원으로 국비와 지방비를 각각 50%로 하고 있음. 사업기간은 2년간임.
- 지원 자금 사용 용도는 다음과 같음.
  - 농업인의 가공활동을 통한 농외소득 개발을 위한 종합지원
  - 농업인의 농산물 가공 활성화를 위한 공동 이용 공간 확보(증축, 보수, 신축), 건축, 시설 및 장비 배치를 위한 설계, 기자재 및 장비 설치
  - 시설물 운전 및 관리, 창업 컨설팅 등 운영인력 확보
  - 창업 및 농산물 가공 활동 희망 농업인·농업법인의 상품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 기술이전, 창업보육 및 코칭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가공기술 개발, 표준화, 상품화, 컨설팅 등에 따른 운영
  - 지역의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 구성 및 컨설팅 지원

### 3.2.3. 중소기업청 지역특화발전특구

- 지역특화발전특구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여건에 맞추어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하여 지역에 적합한 특성화 모델을 발굴하여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04년 9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규제특례법』 제정을 통해 시행되었음.
- 전국적으로 완화 또는 철폐하기 어려운 규제를 특구지역에 한해 완화해줌으로써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탄력적인 운영을 통해 편의성 및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함.
- 추진체계는 지자체에서 특구지정 신청 및 특구계획을 제출하면 특구위원회에서 특구계획 승인 및 지정을 거쳐 지자체 주관으로 운영되며, 특구위원회에서는 추후 운영 평가를 담당함.
- 특구지정이 규제완화 등을 통한 특화사업 추진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정부의 직접적인 예산지원 부재로 활성화는 미흡한 실정이므로, 특구 관련 재정사업 확대를 위해 신규사업 선정·기획시 인센티브 부여 및 기존사업에 특구 활성화 방안을 포함하고 있음.

### 3.3. 농공단지과 관련 사업간의 연관성

- 6차산업화 대책,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향토산업육성사업,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사업 등은 1차, 2차, 3차 산업간의 융·복합화라는 차원에서 농공 단지는 융·복합화 공간으로 관련성이 깊음.
  - 6차산업화 대책에 있어서는 6차산업집적화지구(농촌산업집적화지구)가 농공단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 이들 사업들은 여러 경영체가 모여 사업단을 구성하고, 이 사업단이 단일 경영체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게 됨에 따라 개별 경영체 보다는 규모가 크다고 할 수 있음.
  - 지원대상이 농어업인, 생산자단체, 농수산물가공업체, 체험·휴양마을사업자, 연구단체 등으로 6차산업화 주체들이 대상이 되고 있음. 이들과 농공단지내에 입지한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음.
  - 지역농식품 주체(산·학·연·관)들의 역량을 집중하여 특화된 농산물의 생산·유통·가공·판매 등을 통해 지역농업을 활성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지역특화농공단지에서 강조하는 융·복합화와 특화단지는 연계성이 높음.
- 네트워크 강화, 역량강화 측면에서 지역특화농공단지의 활성화와 연계가 가능함.
- 관련 사업들은 사업체계 구축 및 네트워킹, R&D, 산업화 및 마케팅 등 S/W분야 강화를 통해 사업단 역량강화를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농공단지의 역량강화와 연계가 가능함.
  - 특히, 소프트웨어적인 지원인 교육, 역량강화,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워크숍, 벤치마킹, 지역리더양성 교육, R&D 및 컨설팅, 상품개발 및 마케팅 등의 지원이 특화농공단지의 역량강화를 위해 활용 가능함.

## 제 3 장

### 특화농공단지 실태

#### 1. 산업단지의 유형 구분

- 산업단지의 정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법률제10599호) 제2조(정의)」
  -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 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
- 산업단지의 유형
  - 국가산업단지: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 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일반산업단지: 산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 촉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

른 도시지역에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농공단지(農工團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표 3-1. 산업단지 유형 구분

구분	국가단지	일반 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지정목적	국가기간 산업 및 첨단 과학기술산업 육성	산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 촉진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지식산업·문화산업 정보통신 산업 등 첨단 산업의 육성 및 개발 촉진	농어민 소득증대
지정권자	국토교통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관리권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관리기관	한국산업단지공단 관리권자 및 지자체	관리권자 및 지자체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단지관리공단 입주기업체 협의회 등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단지공단, 국토교통부.

#### ○ 농공단지의 개념

- 농공단지는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견인할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의 한종류임.
- 농어촌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보, 지역주민들이 취업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등을 통해 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격차를 줄여 산업·경제적 균형발전을 위해 조성한 산업단지

#### ○ 농공단지의 목적, 지정 및 관리(통합지침)

- 지정목적: 농어민 소득증대
- 지정권자: 시장, 군수, 구청장
- 관리기관: 관리권자 및 지자체,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단지관리공단, 입주기업 협의회 등

○ 농공단지의 유형

- 농공단지의 구조 고도화 및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농공단지를 전문단지, 지역특화단지, 일반단지로 구분하여 지정함.
- 전문단지: 「산업집적법」의 산업시설구역 용지 면적 중 동일·유사업종 및 연관업종의 입주기업(4개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업체 수 및 면적기준으로 60% 이상이 되는 단지
- 지역특화단지: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역특화업종(향토산업포함)을 영위하는 입주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업체 수 및 면적기준으로 80% 이상이 되는 단지
- 일반단지: 전문단지나 지역특화단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타의 단지
- 기타: 2009년 3월 현재 미개발 단지 중 유형이 구분되지 않는 단지

표 3-2. 산업단지 지정·개정 및 관리체계

구분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단지		농공단지	
일반	기본 계획	산업입지 수급계획(국토교통부)					농어촌산업 육성계획(농식품부)	
	설치 근거	산업법	산업법		산업법		농어촌정비법 산업법	
	목적	국가기간 및 첨단과학기술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업의 지방분산		첨단산업 육성 및 개발 촉진		농어촌 소득증대	
	단지수 (993)	41	497		11		44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지정 절차	구분	-	30만 m <sup>2</sup> 이상	30만 m <sup>2</sup> 이하	10만 m <sup>2</sup> 이상	10만 m <sup>2</sup> 이하	3만~33만 m <sup>2</sup>
		요청	LH,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상공회의소, 지방공기업 등					-
	협 의	협 의	-	국토교통부 등		국토교통부 등		농림축산식품부 등
		승인	-	-	-	-	-	시·도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시·도	시·군·구	시·도	시·군·구	시·군·구
	지정	통보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정비법)
		제한	시·도별 미분양 15% 이상	시·도별 미분양 30% 이상		시·도별 미분양 30% 이상 및 330만 m <sup>2</sup> 이상		시·군·구별 미분양 30% 이상 및 100~200만 m <sup>2</sup> 이상
		해지	5년 내 개발계획 미승인 시	3년 내 개발계획 미승인 시		3년 내 개발계획 미승인 시		2년 내 개발계획 미승인 시
		시행자	국가, 지자체, (지방)공기업,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농어촌공사, 민간(직접개발자, 종합건설회사 등)					
	개발	위탁	국가, 지자체, (지방)공기업, 정부투자기관					
신탁		부동산 신탁업자						

표 3-2. 산업단지 지정·개정 및 관리체계(계속)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관리 근거	산집법	산집법		산집법		산집법
	관리 지침	산업단지관리지침					통합지침
	관리 권자	산업통상자원부	시·도	시·군·구	시·도	시·군·구	시·군·구
	관리 기본 계획	· 수립(변경): 관리기관 → · 승인: 관리권자					
	관리 기관	지자체, 산단공, (지방)산단공, 입주업체협의회, 지방공기업, 지역농협, 중기협,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입주 계약	(제조업)입주업체 ↔ 관리기관					

표 3-3. 산업단지 지원제도

구분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단지	농공단지	
지정 · 개발	부지 조성비	-	-	-	○ 농식품부: 3~7만 원/㎡
	도로	○	○	○	○
	용수	○	○	○	○
	폐수종말 처리	○	○	○	○
	조세	· 취득세: 감면	· 취득세: 감면	· 취득세: 감면	· 취득세: 감면
	부담금 감면	-	-	-	· 농지부담금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관리	조세	· 재산세: 감면(5년간) *수도권 50% 감면	· 재산세: 감면(5년간) *수도권 50% 감면	· 재산세: 감면(5년간) *수도권 50% 감면	· 재산세: 감면(5년간) *수도권 50% 감면 · 법인(소득)세: 50%(4년간)
	경영·기술	· 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진흥공단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단지	·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클러스터사업)			
기업	※ 기업지원사업 · 경영지원, 인력지원, R&D지원, 지방이전 지원, 창업지원 등				



## 2. 산업단지 현황

### 2.1.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실적

- 2012년 우리나라의 산업단지는 총 993개이고, 면적은 1,360km<sup>2</sup>임.
  - 산업단지 전체 분양률은 95.4%이고, 국가산업단지가 98.1%로 가장 높음. 도시첨단단지의 분양률은 68.7%로 산업단지의 유형에서 가장 낮음.
- 유형별로는 국가산업단지가 41개로 4.1%, 일반산업단지가 497개로 50.0%, 도시첨단단지가 11개로 1.1%, 농공단지가 444개로 44.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단지수로는 일반단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면적기준으로는 국가단지가 58.3%, 일반 및 도시첨단 단지가 36.5%, 농공단지가 5.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표 3-4. 산업단지 및 관리현황(2012)

단위: 개, 천㎡, %

유형	단지수	지정 면적	관리 면적	산업시설구역			
				분양대상	분양	미분양	분양률
국가	41	792,287	576,764	237,271	232,701	4,570	98.1
일반	497	493,984	486,136	174,355	160,085	14,270	91.8
도시 첨단	11	2,271	2,269	265	182	83	68.7
농공	444	70,963	70,542	48,899	46,714	2,185	95.5
합계	993	1,359,505	1,135,711	460,790	439,682	21,108	95.4

주: 전체면적은 미개발면적을 포함한 산업시설구역 총 면적을 의미하며, 분양대상은 산업시설구역 중 조성된 면적(미개발면적제외), 분양률은 분양대상용지 중 분양된 면적의 비율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단지통계, 2013.

## 2.2. 입주 및 고용 실태

- 2012년 전국 산업단지 입주기업은 75,794개사로 2011년 대비 4.8%(3,463개)증가하였으며, 이중 89.6%인 67,895개사가 가동 중임.
- 산업단지 지정이 증가하면서 국가, 일반, 농공단지 등 각 단지에서 입주업체 및 가동업체가 증가하고 있으며, 입주계약 업체중 가동중인 업체는 국가산단이 91.3%, 일반 산업단지는 86.6%, 도시첨단은 85.5%, 농공단지는 88.2%임.
- 전국산업단지 고용인원은 187만 8,108명으로, 2011년 대비 9.6% (164,508명)증가하였음.
- 국가산업단지가 107만 2,277명으로 2011년 대비 10.9%, 일반산업단지가 66만 4,681명으로 9.4%, 도시첨단단지가 1,444명으로 43.0%, 농공단지는 13만 9,706명으로 1.1%씩 각각 증가하였음.

표 3-5. 산업단지 입주 및 가동업체 현황(2012)

단위: 개, %, 명

유형	입주 및 가동업체(개)					고용(명)
	입주 계약업체 (A)	공장 설립업체 (B)	가동 업체 (C)	가동/입주 업체비율 (C/A) <sup>1)</sup>	가동/공장설립 업체비율 (C/B) <sup>2)</sup>	
국가	46,352	42,369	42,303	91.3	99.8	1,072,277
일반	23,082	20,255	19,987	86.6	98.7	664,681
도시첨단	152	130	130	85.5	100.0	1,444
농공	6,208	5,776	5,475	88.2	94.8	139,706
합계	75,794	68,530	67,895	89.6	99.1	1,878,108

주: 1) 가동/입주업체비율: [가동업체/입주계약업체] × 100

2) 가동/공장설립업체비율: [가동업체/공장설립완료업체] × 10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단지통계, 2013.

### 2.3. 생산 및 수출실적

- 2012년 전국 산업단지 생산은 266조 2,79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3,119천억 원) 증가하였으며, 생산액 역시 1,037조 4,502억 원으로 전년과 비교하여 5.3%(5조 2,428천억 원) 증가하였음.
- 유형별 생산액은 전년 대비 국가산업단지가 5.7%, 일반산업단지가 5.6%, 도시첨단단지가 1.3% 증가한 반면 농공단지는 1.5% 감소함.
- 2012년 전국 산업단지 수출은 1,137억 3,600백 만 달러로 전년 대비 1.1%(12억 1,900만 달러) 증가하였으며, 수출액 역시 4,301억 2,700만 달러로 전년과 비교하여 4.4%(180억 2,900만 달러) 증가함.

표 3-6. 산업단지 생산 및 수출실적(2012)

단위: 백만 원, 천 달러, %

유형	생 산			수 출		
	2012	2011	증감률	2012	2011	증감률
국가	679,601,907	642,870,103	5.7	267,435,375	275,814,533	-3.0
일반	308,731,870	292,315,511	5.6	151,071,917	123,950,723	21.9
도시첨단	157,362	155,276	1.3	419	1,178	-64.4
농공	48,959,100	49,681,132	-1.5	11,619,519	12,332,046	-5.8
합계	1,037,450,239	985,022,022	5.3	430,127,230	412,098,480	4.4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단지통계, 2013.

- 유형별 수출액은 전년 동분기와 대비하여 국가산업단지가 3.0%, 도시첨단단지 64.4%, 농공단지가 5.8% 감소한 반면, 일반산업단지는 21.9% 증가함.

그림 3-1. 산업단지 유형별 생산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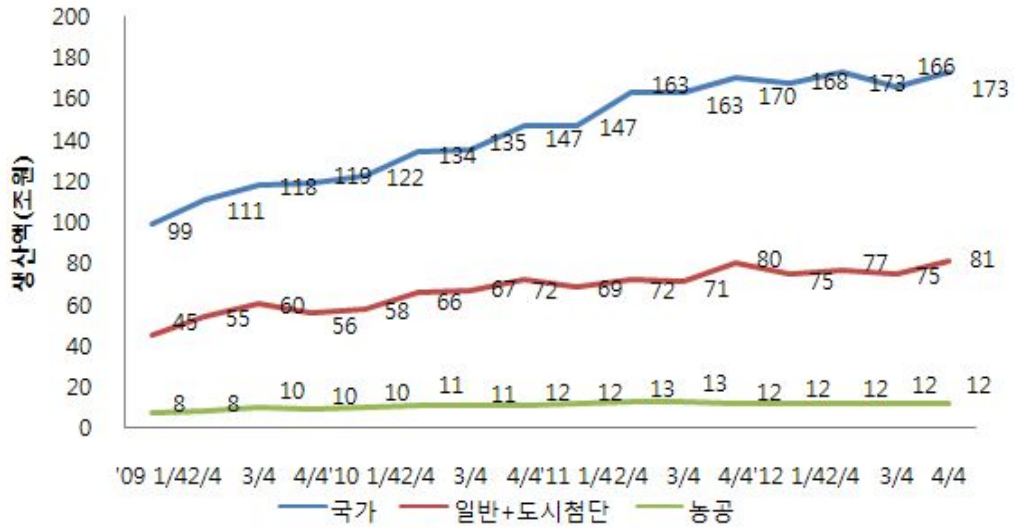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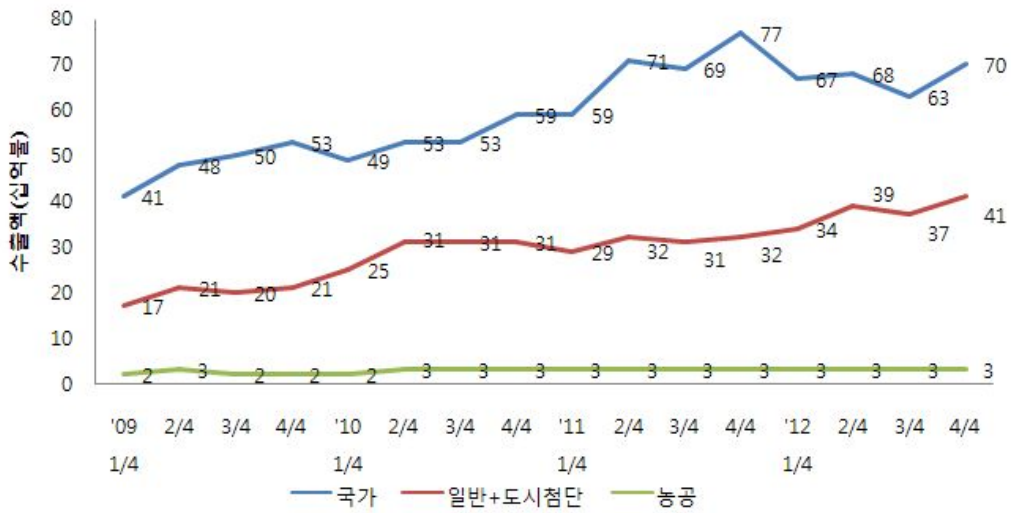


그림 3-2. 산업단지별 수출액 추이



## 2.4. 산업단지에서 농공단지 역할

- 산업단지는 국가, 일반, 도시첨단, 농공단지 등으로 구분하고 있음. 전국의 산업단지에서 입주 계약을 한 농공단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8.2%, 가동업체는 약 8.1%를 차지하고 있음. 산업단지에서는 국가단지가 가장 비중이 높고, 다음으로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도시첨단단지 순으로 나타남.
- 산업단지에서 농공단지는 지역별로 강원도가 68.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경기도는 산업단지에서 농공단지가 전무한 실정임.
- 수도권 및 대도시 광역단체의 농공단지 비율은 상대적으로 지방자치단체보다 낮고, 농공단지의 특성상 농업이 주력 사업인 지방일수록 높음.
- 산업단지에서 농공단지가 차지하는 고용 비중은 2012년 기준 7.4%, 생산비중은 4.7% 그리고 수출비중은 2.7%를 차지하고 있음.
- 광역시와 도별 농공단지의 비중에서 상대적으로 농촌지역이 많은 지자체의 농공단지 비중이 높음. 전체 산업단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지만 농촌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및 지역 공동체 유지 측면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따라서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 정책과 지원수단이 요구됨.

표 3-7. 산업단지에서 농공단지의 역할

단위: 건, 개, %

시도	유형	입주계약	공장설립완료	가동업체
전국	국가	46,352	42,369	42,303
	일반	23,082	20,255	19,987
	도시첨단	152	130	130
	농공	6,208	5,776	5,475
	소계	75,794	68,530	67,895
	비율(A)	8.2	8.4	8.1
부산	소계	4,467	3,822	3,818
	농공	23	23	23
	비율(B)	0.5	0.6	0.6
대구	소계	4,297	4,076	4,026
	농공	78	78	78
	비율(B)	1.8	1.9	1.9
광주	소계	2,348	2,230	2,155
	농공	66	66	61
	비율(B)	2.8	3.0	2.8
울산	소계	1,502	1,356	1,354
	농공	103	103	103
	비율(B)	6.9	7.6	7.6
경기	소계	22,866	21,752	21,672
	농공	5	5	5
	비율(B)	0.0	0.0	0.0
강원	소계	1,227	1,105	1,073
	농공	845	781	753
	비율(B)	68.9	70.7	70.2
충북	소계	1,593	1,364	1,331
	농공	406	391	365
	비율(B)	25.5	28.7	27.4
충남	소계	2,083	1,672	1,626
	농공	982	906	861
	비율(B)	47.1	54.2	53.0
전북	소계	2,329	2,017	1,970
	농공	691	637	615
	비율(B)	29.7	31.6	31.2
전남	소계	2,057	1,802	1,725
	농공	1,035	960	901
	비율(B)	50.3	53.3	52.2
경북	소계	4,235	3,637	3,527
	농공	928	897	827
	비율(B)	21.9	24.7	23.4
경남	소계	4,901	4,307	4,246
	농공	990	874	829
	비율(B)	20.2	20.3	19.5
제주	소계	83	61	60
	농공	56	55	54
	비율(B)	67.5	90.2	90.0

주: 소계는 해당 지자체의 합계를 의미, A는 전국 기준, B는 해당 지자체 기준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단지통계, 2013.

표 3-7. 산업단지에서 농공단지의 역할(계속)

단위: 명, 백만 원, 천 달러, %

시도	유형	고용	생산액	수출액
전국	국가	1,072,277	679,601,907	267,435,375
	일반	664,681	308,731,870	151,072,390
	도시첨단	1,444	157,362	419
	농공	139,706	48,959,100	11,619,519
	소계	1,878,108	1,037,450,239	430,127,703
	비율(A)	7.4	4.7	2.7
부산	소계	87,134	25,254,844	7,035,911
	농공	1,682	639,376	140,551
	비율(B)	1.9	2.5	2.0
대구	소계	88,243	26,030,317	7,076,374
	농공	1,213	416,130	34,680
	비율(B)	1.4	1.6	0.5
광주	소계	60,889	21,189,527	7,249,463
	농공	1,572	855,333	65,849
	비율(B)	2.6	4.0	0.9
울산	소계	127,017	210,340,418	94,803,251
	농공	3,743	1,567,040	134,664
	비율(B)	2.9	0.7	0.1
경기	소계	433,096	155,084,485	50,666,746
	농공	232	69,377	1,128
	비율(B)	0.1	0.0	0.0
강원	소계	21,670	4,073,943	969,302
	농공	14,811	2,166,080	719,624
	비율(B)	68.3	53.2	74.2
충북	소계	84,158	40,189,658	13,710,169
	농공	16,070	6,970,396	2,061,934
	비율(B)	19.1	17.3	15.0
충남	소계	121,105	99,806,017	67,041,499
	농공	29,701	12,118,035	2,272,249
	비율(B)	24.5	12.1	3.4
전북	소계	71,284	38,946,705	14,687,791
	농공	11,668	3,633,665	549,657
	비율(B)	16.4	9.3	3.7
전남	소계	69,816	134,101,046	54,409,514
	농공	14,126	3,672,192	1,173,801
	비율(B)	20.2	2.7	2.2
경북	소계	163,504	117,182,102	41,731,708
	농공	21,146	8,419,395	1,585,447
	비율(B)	12.9	7.2	3.8
경남	소계	235,914	104,054,988	56,973,727
	농공	23,136	8,249,020	2,877,110
	비율(B)	9.8	7.9	5.0
제주	소계	972	190,537	3,112
	농공	606	183,061	2,825
	비율(B)	62.3	96.1	90.8

주: 소계는 해당 지자체의 합계를 의미, A는 전국 기준, B는 해당 지자체 기준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단지통계, 2013.

### 3. 특화농공단지 현황

#### 3.1. 분양 및 지원 현황

##### 3.1.1. 분양 현황

- 2013년 11월 현재 23개의 특화농공단지가 있고, 분양 완료된 단지는 2개, 분양중은 9개, 나머지는 분양계획 단계에 있음.
  - 그리고 특화농공단지는 6개도에 걸쳐 있고 강원도는 3개 시군, 충북은 1개 군, 충남은 4개 군, 전북은 2개 시군, 전남은 7개 군, 그리고 경북은 3개 군에 위치하고 있음.
- 농어촌지역에 운영 및 계획중인 특화농공단지에서 현재 운영이 활발히 진행되는 단지는 거의 2~3 단지로 저조한 실정임.
  - 대포제2특화단지의 공장가동률은 95.5%로 가장 높고, 현재 활발히 단지가 운영되고 있음.
- 대부분의 특화단지는 단지의 조성과 계획 및 미개발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조성이 완료된 단지의 경우 해당 업체의 입주가 지연 또는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실제 가동률은 상당히 저조한 실정임.
- 특히, 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한 단지는 대부분 수산물과 관련이 있지만, 농산물과 관련한 단지의 운영은 전무한 실정임.
- 특화단지로 지정되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의 내부 문제로 현재 미개발, 취소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음.



표 3-8. 특화농공단지 조성 현황

단위: 개, %

시도	시군	단지명	조성 상태	입주 계약	공장 설립 완료			공장 설립 중		공장가동업체율 (입주계약업체)
					소계	가동	휴 폐업	건설	미 착공	
강원	정선군	에미특화	완료	3	1	1	-	2	-	33.3
	고성군	해양심층수특화	완료	9	5	5	-	2	2	55.6
	속초시	대포제2특화	완료	22	22	21	-	1	-	95.5
	속초시	대포제3특화	조성중	20	-	-	-	-	20	-
충북	괴산군	발효식품특화	조성중	-	-	-	-	-	-	-
충남	홍성군	광천김특화	조성중	9	4	4	-	3	2	44.4
	서천군	서면특화	조성중	3	-	-	-	-	-	-
	금산군	인삼약초특화	조성중	-	-	-	-	-	-	-
	논산군	노성특화	미개발	-	-	-	-	-	-	-
전북	고창군	복분자특화	완료	2	-	-	-	2	-	-
	정읍시	소성특화	미개발	-	-	-	-	-	-	-
전남	강진군	마량특화	완료	14	14	13	1	-	-	92.9
	강진군	칠량특화	완료	14	8	8	-	6	-	57.1
	강진군	칠량제2특화	미개발	-	-	-	-	-	-	-
	해남군	마산특화	미개발	-	-	-	-	-	-	-
	완도군	해양생물특화	미개발	-	-	-	-	-	-	-
	장흥군	장흥특화	조성중	1	-	-	-	-	1	-
	고흥군	동강특화	미개발	-	-	-	-	-	-	-
	함평군	명암특화	미개발	-	-	-	-	-	-	-
경북	영암군	영암특화	미개발	-	-	-	-	-	-	-
	영덕군	영덕로하스특화	조성중	-	-	-	-	-	-	-
	영양군	남영양특화	미개발	-	-	-	-	-	-	-
	칠곡군	칠곡농기계특화	조성중	-	-	-	-	-	-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3.

### 3.1.2.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현황

- 강원도 정선군의 예미특화농공단지는 ‘폐광지역 공동화 현상 해소 및 농외 소득원 개발’을 목적으로 조성되었고, 입주조건에서 입주업종으로 음식료품, 목재종이, 지역특화사업 등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주요 혜택으로는 세제와 금융부분이 있음.
  - 세제 지원
    - 외국인 투자기업: 최고 10년간 100%, 그 후 5년간 50%에서 최저 5년간 50%,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휴·폐업공장): 5년간 50%
    -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에서 이전하는 기업: 5년간 100%, 그 후 3년간 30%
    - 수도권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이전하는 기업: 3년간 100%, 그 후 2년 50%
    - 폐광지역진흥지구 공장 신·증축 및 부지: 7년간 100%, 그 후 3년간 50%
  - 금융 지원
    - 이전 보조금: 건물취득가액 및 시설이전비용의 10% 범위 내에서 최고 5억 원 이내
    - 부지매입 보조금: 산업단지는 매입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5억 원 이내
    - 임대료 보조금: 임대료의 50% 범위 내에서 5억 원 이내
    - 고용 보조금: 상시 고용인원 10명 초과 시 1명당 60만원까지 당해 기업당 3억 원 이내
    - 교육훈련 보조금: 상시 고용인원 10명 초과 시 1명당 60만원까지 당해 기업당 3억 원 이내
    - 투자 보조금: 도 이외지역에서 이전 5억 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의 10% 범위 내 기업당 최고 5억 원 이내
  - 기타 물류 보조금 및 기반시설 지원

- 강원도 속초시의 대포제3농공단지에는 ‘지역특산품과 해양심층수를 이용하여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성되었고, 입주조건에서 입주업종으로 음식료품 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 등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주요 혜택으로는 세제와 금융부분이 있음.
  - 세제 지원
    - 취득세 전액 면제
    - 소득세·법인세 5년간 50% 감면
    - 재산세 5년간 50% 감면(최초 취득 시 5년 이내)
  - 금융 지원
    - 시설자금: 20억 원 이내, 연 4.58% 대출금리, 입주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 신청, 5년 거치 10년 상환
    - 운영자금: 5억 원 이내, 연 4.58% 대출금리, 공장건설 완료 후 신청, 2년 거치, 4년 이내 상환
    - 고용인력(100인 이상, 200억 원 이상) 보조금 차등 지급: 40~100억 원
    - 연구소, 본사이전, 공장이전에 따라 보조금 차등 지급: 3~6억 원
    - 20명 이상 신규고용 및 교육훈련: 2~4억 원
  
- 충청남도 홍성군의 광천김특화농공단지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유희노동력의 농외소득 증대 기여’를 위해 조성되었고, 입주조건에서 입주업종으로 김 2차가공업 및 연관업종 등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주요 혜택으로는 세제와 금융부분이 있음.
  - 세제 지원
    - 취득세 전액 면제
    - 재산세 최초 취득 시 5년간 50% 감면
  - 금융 지원
    - 창업경쟁력강화자금: 공장건축, 제조설비 등 지원, 15억 원(시설 12억, 운전 3억 원), 연 4.4%

- 경영안정 자금: 일시적 자금난 지원, 3~5억 원(업체 당)
- 충청북도 괴산군의 발효식품농공단지에는 ‘농어촌지역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성되었고, 음식료, 기타 제조업 등이 입주할 수 있음. 주요 혜택으로는 금융부분이 있음.
- 금융 지원
    - 융자한도: 시설투자자금 10억 원, 운전자금 5억 원
    - 시설자금: 8년 이내(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운전자금: 2년 일시상환, 창업의 경우 운전자금은 1억 원 한도
- 전라북도 고창군의 복분자농공단지에는 ‘고용창출 및 농촌지역 소득증대 기여’하기 위해 조성되었고, 입주조건에서 입주업종으로 음료, 식료품제조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등이 있으며, 주요 혜택으로는 세제와 금융부분이 있음.
- 세제 지원
    - 취득세: 전액면제
    - 재산세: 5년간 면제(신규 취득 시)
    - 법인세·소득세: 4년간 50% 감면
  - 금융 지원: 투자효과가 기대되는 성장 유망 중소제조업체로서 제조업 전 업종이 30% 이상인 공장등록업체
    - 지원한도: 시설자금 7~10억 원 이하, 운전자금 3억 원 이하, 금리 연 4.4%(변동금리)
    - 대출기간: 시설자금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운전자금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 지원조건: 운전자금 3억 원 한도, 이차보전 : 2~3%  
경영안정자금 5억 원 한도, 이차보전 : 4%
- 전라남도 강진군의 마량농공단지에는 ‘농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특산

물을 활용'하기 위해 조성되었고, 입주조건에서 입주업종으로 음식료(미역, 다시마, 김), FRP선박제조 등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주요 혜택으로는 금융부분이 있음.

- 금융 지원: 중소벤처창업, 경영혁신자금, 긴급경영안정, 구조조정, 기술개발사업화 등
- 지원조건: 금리 4.4~7.9%, 용자한도 3~40억 원
- 대출기간: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 전라남도 강진군의 칠량농공단지 '지역의 풍부한 수산물을 원료로 가공 전문 특화단지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 도모'하기 위해 조성되었고, 입주조건에서 입주업종으로 식료품제조업 등이고, 세제와 금융혜택은 없음.

○ 경상북도 영덕군의 영덕로하스특화농공단지는 '중소 수산물 가공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 경제활성화 및 고용창출' 위해 조성되었고, 입주조건에서 입주업종으로 음식료품 제조업 등이며, 주요 혜택으로는 세제, 금융부분이 있음.

- 세제 지원
  - 취득세: 면제
  - 재산세·종합부동산세: 5년간 면제
  - 법인세·소득세: 신규 입주 계약시 감면(지정당시 인구 20만 명 미만 시·군 소재 단지)
- 금융 지원
  - 시설자금 8억 원, 운전자금 3억 원
  - 대출기간: 시설자금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운전자금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 3.2. 입주업체 현황

- 분양이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특화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의 업종에는 음식료, 섬유 의복, 목재 종이, 석유 화학, 비금속, 기계, 기타 등이 있음.
- 운영되고 있는 특화농공단지에는 음식료 업체가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음. 지역의 특산물 또는 농산물을 활용한 업체의 운영이 특징임.

표 3-9. 특화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

단위: 개

시도	시군	단지명	업종별 입주업체 현황						
			계	음식료	비금속	철강	기계	전기전자	기타
강원	정선군	예미특화	3	3	-	-	-	-	-
	고성군	해양심층수특화	9	9	-	-	-	-	-
	속초시	대포제2특화	22	12	3	-	-	-	7
	속초시	대포제3특화	20	12	-	-	3	-	5
충북	괴산군	발효식품특화	-	-	-	-	-	-	-
충남	홍성군	광천김특화	9	9	-	-	-	-	-
	서천군	서면특화	-	-	-	-	-	-	3
	금산군	인삼약초특화	-	-	-	-	-	-	-
전북	논산군	노성특화							
	고창군	북분자특화	2	2	-	-	-	-	-
	정읍시	소성특화							
전남	강진군	마량특화	14	13	-	-	-	-	1
	강진군	칠량특화	14	9	-	-	-	-	5
	강진군	칠량제2특화							
	해남군	마산특화	-	-	-	-	-	-	-
	완도군	해양생물특화	-	-	-	-	-	-	-
	장흥군	장흥특화	1	1	-	-	-	-	-
	고흥군	동강특화							
	합평군	명암특화							
경북	영암군	영암특화							
	영덕군	영덕로하스특화	-	-	-	-	-	-	-
	영양군	남영양특화							
	칠곡군	칠곡농기계특화	-	-	-	-	-	-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3.

### 3.3. 고용 및 기타 현황

- 특화농공단지의 고용현황을 보면 현재 가장 활발히 운영되는 강원도 지역의 고용현황이 높게 나타남.
- 특화농공단지는 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하여 운영되는 업체이므로 지역의 고용창출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지역의 특화농공단지의 경영성과의 지속성 확보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임.

표 3-10. 특화농공단지 고용창출 현황

단위: 명

시도	시군	단지명	고용현황			계	현지인		외지인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강원	정선군	예미특화	10	2	12	12	-	12	-
	고성군	해양심층수특화	21	48	69	69	4	31	34
	속초시	대포제2특화	81	111	192	192	-	180	12
	속초시	대포제3특화	-	-	-	-	-	-	-
충북	괴산군	발효식품특화	-	-	-	-	-	-	-
충남	홍성군	광천김특화	30	58	88	88	59	18	11
	서천군	서면특화	-	-	-	-	-	-	-
	금산군	인삼약초특화	-	-	-	-	-	-	-
전북	논산군	노성특화							
	고창군	북분자특화	-	-	-	-	-	-	-
	정읍시	소성특화							
전남	강진군	마량특화	45	94	139	139	48	83	8
	강진군	칠량특화	-	-	-	-	-	-	-
	강진군	칠량제2특화							
	해남군	마산특화	-	-	-	-	-	-	-
	완도군	해양생물특화	-	-	-	-	-	-	-
	장흥군	장흥특화	-	-	-	-	-	-	-
	고흥군	동강특화							
	합평군	명암특화							
경북	영암군	영암특화							
	영덕군	영덕로하스특화	-	-	-	-	-	-	-
	영양군	남영양특화							
	칠곡군	칠곡농기계특화	-	-	-	-	-	-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3.

### 3.4. 기초자치단체별 특화농공단지 비중

- 특화농공단지가 운영 및 조성, 그리고 계획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강원도는 42개의 농공단지가 있고, 충북은 42개, 충남 90개로 가장 많고, 전북 53개, 전남 58개, 경북 66개의 농공단지가 있음. 그리고 시군별 농공단지에서 특화농공단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강진군이 100%로 가장 높음<표 3-11>.
  - 2013년 현재 특화농공단지로 지정되어 운영, 조성, 계획된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농공단지와 함께 대부분 1~2개의 특화농공단지가 있음.
- 2013년 11월 현재 23개의 특화농공단지에서 분양이 완료된 단지는 2개, 분양중인 단지는 9개로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무리한 사업추진 등으로 최근 경북 영양, 경남 거창과 충북 단양의 특화농공단지는 해제하였음.
-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지역의 농공단지 안에서 특화농공단지는 소수에 불과하지만, 기존 농공단지와 신규 조성되는 특화농공단지간의 지원과 업종의 제한 등으로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 일반농공단지는 동종업종 위주로 운영되지 않고, 상대적으로 신규로 조성된 특화농공단지에 비해 시설 등이 열악한 수준에 있음. 그리고 신규 조성된 특화농공단지로 기존 일반농공단지의 투자가치가 하락하는 문제가 지역에 발생하고 있으며, 지원의 집중 문제도 발생하고 있음.
- 기존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는 제조업 관련 다양한 업체가 입주하여 운영되고 있음. 일반 제조업과 영세한 식음료 가공업체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부분 제조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간 경쟁적으로 특화농공단지가 조성된다면 실패할 확률이 높은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단지의 지정에서 조성 단계별로 계획제도를 도입하여 관리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함.



표 3-11. 특화농공단지 비중

단위: %, 개

시도	시군	단지명	지정 일자	조성 상태	공정률	분양 상태	단지수	비율
강원	정선군	예미	2009-09-09	완료	100	분양중	3(1)	33.3
	고성군	해양심층수	2009-05-13	완료	100	분양중	2(1)	50.0
	속초시	대포제2	2007-12-28	완료	100	분양완료	3(2)	66.7
	속초시	대포제3	2011-05-03	조성중	88	분양중		
충북	괴산군	발효식품	2009-12-11	조성중	83	분양중	3(1)	33.3
충남	홍성군	광천김	2008-05-30	조성중	99	분양중	8(1)	12.5
	서천군	서면	2007-09-14	조성중	80	분양중	5(1)	20.0
	금산군	인삼약초	2009-08-10	조성중	44	분양계획	5(1)	20.0
	논산시	노성	2013.11예정	미개발	-	MOU체결	9(1)	11.1
전북	고창군	복분자	2010-05-31	완료	100	분양중	4(1)	25.0
	정읍시	소성	2013.10예정	미개발			7(1)	14.3
전남	강진군	마량	1988-01-27	완료	100	분양완료	3(3)	100
	강진군	칠량	2009-09-16	완료	100	분양중		
	강진군	칠량제2	2013-07-18	미개발	-			
	해남군	마산	2012-08-20	미개발	-	분양계획	3(1)	33.3
	완도군	해양생물	2012-10-19	미개발	-	분양계획	3(1)	33.3
	장흥군	장흥	2011-05-04	조성중	95	분양중	3(1)	33.3
	고흥군	동강	2014상예정	미개발	-		3(1)	33.3
	합평군	명암	2014상예정	미개발	-		4(1)	25.0
경북	영암군	영암	2014상예정	미개발	-		3(1)	33.3
	영덕군	영덕로하스	2012-06-18	조성중	60	분양계획	3(1)	33.3
	영양군	남영양	2013-09-30	미개발	10	분양계획	-	-
	칠곡군	칠곡농기계	2013-03-21	조성중	8	분양계획	2(1)	50.0

주: ( )는 기존 농공단지에서 차지하는 특화농공단지 개수를 의미함. 특화농공단지가 일반농공단지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 3.5. 특화농공단지과 지역산업의 연계 실태와 문제점

- 특화농공단지의 실태와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현재 단지가 조성 및 분양이 완료되어 운영되고 있는 특화농공단지를 중점적으로 현장 조사와 현장 토론회를 실시하였음.
  - 분석대상: 강원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등의 사례를 중점적으로 분석
- 그리고 특화농공단지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농공단지 중에서 차별화된 방안으로 진행되는 사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음.

#### 3.5.1. 강원도

- 강원도는 국가 1개, 일반 20개, 도시첨단 3개, 농공 42개 등 총 66개의 산업 단지가 있으며, 2011년과 비교하여 입주기업은 1,227개사로 3.6%, 고용인원은 2만 1천 명으로 4.5% 증가한 반면, 생산은 4조 739억 원으로 14.5%, 수출은 9억 6천 9백만 달러로 9.5% 감소함(2012년 기준, 한국산업공단).
- 강원도에서 특화농공단지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속초시, 고성군, 정선군 등이고, 지역산업과 특산물이 밀접하게 융합되어 운영되는 곳은 속초시와 고성군임. 그리고 정선군은 지역의 불리한 조건 등으로 단지는 조성되었지만, 입주기업의 적극적 참여가 저조하여 현재 지역농협과 지자체 등이 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속초시의 특화농공단지는 지역의 특산물인 젓갈류를 활용하여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와 운영협의회가 상호 협력하여 향토산업육성사업 등 정부지원 사업을 활용하여 단지의 활성화에 도모하고 있음.

- 주요 지방자치단체들은 특화농공단지를 조성하였지만, 사전적으로 입주업체 선정 등의 계획 부실과 지역의 조건 불리성 등으로 단지가 활발히 가동되고 있지 않은 상태임. 특히, 운영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부서별 협력과 공조를 바탕으로 지역의 자원과 시설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
- 속초시의 특화농공단지 활성화의 성공요인은 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한 것,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 및 운영협의체와의 유기적인 관계로 볼 수 있음.

### 3.5.2. 전라북도

- 전라북도는 국가 4개, 일반 21개, 도시첨단 1개, 농공 51개 등 총 77개의 산업단지가 있으며, 2011년과 비교하여 입주기업은 2,329개사로 3.5%, 고용인원은 7만 1천 명으로 6.5%, 생산은 38조 9,467억 원으로 1.3% 증가한 반면, 수출은 146억 8천 8백만 달러로 6.1% 감소함.
- 전라북도에서 특화농공단지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읍시, 고창군 등이고, 지역산업과 특산물이 밀접하게 융합되어 운영되는 곳은 고창군임.
- 고창군은 지역의 특산품인 복분자를 활용하여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와 단지운영협의회가 상호 협력하여 향토산업육성사업 등 정부지원사업을 활용하여 단지의 활성화에 도모하고 있음. 특히 연구와 개발 및 식음료 제품의 생산 등이 한 곳에 집적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단지를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현재 분양 및 완료된 특화농공단지에서 지역의 농산물을 활용한 유일한 단지임. 농산물을 활용하여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모범사례로 자리를 매김하기 위해서는 생산자, 업체 담당자, 연구, 행정 등의

종합적인 연계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고창군의 컨트론타워 역할이 중요함.

### 3.5.3. 전라남도

- 전라남도는 국가 5개, 일반 30개, 농공 57개 등 총 92개의 산업단지가 있으며, 2011년과 비교하여 입주기업은 2,057개사로 4.4% 증가하였고, 고용인원은 7만 명으로 6.5% 감소하였으며 생산은 134조 1,010억 원 으로 7.3%, 수출은 544억 1천만 달러로 7.6% 증가함.
- 전라남도에서 특화농공단지를 조성중이거나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강진군, 해남군, 완도군, 장흥군, 고흥군, 함평군, 영암군 등이 있으며, 분양중 및 분양완료 된 곳은 강진군과 장흥군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특화농공단지가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음.
- 강진군의 경우 지역의 3개 농공단지 모두가 특화농공단지로 지정되어 분양완료, 분양중, 계획 등에 있지만, 특화농공단지 운영에 따른 지역 활성화가 미흡한 실정임.
- 강진군과 장흥군의 특화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하고, 기존 지역에 입주한 업체의 단지 내 흡수를 위한 행정적 지원과 인센티브가 요구됨.

### 3.5.4. 특화농공단지와 지역특산품의 연계와 활성화

- 특화농공단지에서 원활히 운영되는 곳은 수산물을 활용한 지역으로 농산물을 활용하여 운영하는 특화농공단지는 아직 미흡한 실정임. 그리고 특화농공단지가 활성화된 단지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운영협의체 간 긴밀한 협조가 동시에 잘 운영되는 곳이 대부분임.

- 현재 운영중인 특화농공단지 조성 및 조성 수준에 비해 열악한 수준임. 당초 지방자치단체가 특화농공단지의 조성에만 집중하여 구체적인 단지의 조성 후 활용 방안에 대한 계획이 부족한 실정임.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들의 이해관계 상충 문제와 단지의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등의 부재로 특화농공단지의 활용이 미흡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특화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함.
  - 특화농공단지 조성 후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이 필요
  -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
  - 이해관계 당사자의 갈등조정을 위한 내부 협의체의 운영이 필요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및 관리 지원이 필요
  
- 지방자치단체는 특화농공단지의 조성 관련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진행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전시행정처럼 조성에만 관심을 갖고, 조성 완료된 후 운영과 발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의 부족 문제는 개선해야 할 중요한 과제임.
  
- 그리고 기존 지역 특산물을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는 농공단지 업체와 단지의 업체와의 갈등 관계를 사전에 차단하는 노력이 필요함. 특히 지역농협과 영농조합 등의 단체와 협력하여 사업을 구상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되어야 함.

## 제4장

### 농공단지 관련 정책수요 분석

#### 1. 조사 개요

- 농촌지역의 고용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기존 농공단지의 개선사항과 특화농공단지의 발전 방안에 대한 정책적 수요를 파악하여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함.

표 4-1. 조사 설계

구 분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설문조사
조사대상	· 농공단지 및 특화농공단지 협의회 관련자
조사 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
유효 표본	· 121개
조사 기간	· 2014년 1~2월

- 농공단지(특화)단지의 활성화 방안과 관련한 설문조사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일반적 현황, 특화농공단지 인식
  - 농공 및 특화단지 관리 방안 지원제도 의향
  - 농공(특화)단지의 6차산업 연계 및 활성화 방안 등

## 2. 농공단지 운영 실태

- 농공단지 관련 설문 대상지역은 전국이며, 경남지역 농공단지 업체가 31개(25.6%)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충남(26개), 경북(16개), 전북(15개), 강원도(12개), 전남(12개), 충북(9개) 순임. 그리고 농공단지 중에 일반단지는 112개(92.6%)로 가장 많고, 특화단지(6개), 전문단지(3개) 등 총 121개 단지가 있음.
- 현재 입주해서 운영하는 업체수는 단지별 10~19개 업체가 34.7%(42개)로 가장 높고, 1~9개 업체로 구성된 단지도 31개(25.6%), 40개 이상 기업이 단지를 형성하여 운영되는 곳도 7개(5.8%)를 차지하고 있음.
  - 조사 단지별 업체 수에서 40개 이상의 업체가 입주하여 운영되는 농공단지는 7개(5.8%)를 차지하고 있고, 9개 이하 업체가 입주하여 운영되는 단지도 31개 25.6%를 차지하고 있음.
  - 단지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입주업체의 규모는 상당히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표 4-2. 농공단지별 업체수

단위: 개, %

구 분	1~9개	10~19개	20~29개	30~39개	40개 이상	합계
빈도	31	42	26	15	7	121
비율	25.6	34.7	21.5	12.4	5.8	100

- 단지별 휴업 업체수가 없는 곳은 81개(66.9%)이고, 1개 이상 휴업 업체가 있는 곳은 31개 단지(30% 내외)로 나타남.

표 4-3. 휴업 업체수

단위: 개, %

구 분	0개	1개	2개	3개	4개	5개	모름/ 무응답	합계
빈도	81	23	9	3	3	1	1	121
비율	66.9	19	7.4	2.5	2.5	0.8	0.8	100

- 조사 단지별 폐업 업체가 없는 단지는 전체에서 약 76.9%(93개 단지) 정도임. 그리고 1개의 폐업업체는 12개 단지(9.9%)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고, 대부분 단지별 3개 이내의 폐업업체가 20% 정도가 있으므로, 단지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기존 업체의 폐업처리와 활용방안의 마련이 필요함.

표 4-4. 폐업 업체수

단위: 개, %

구 분	0개	1개	2개	3개	5개	10개	15개	모름/ 무응답	합계
빈도	93	12	8	4	1	1	1	1	121
비율	76.9	9.9	6.6	3.3	0.8	0.8	0.8	0.8	100

- 단지별 운영업체의 경영상태에서 ‘원활’하다고 응답한 단지는 27개(22.3%), ‘매우 원활’은 10개(8.3%)로 전체 30% 정도의 단지가 양호한 경영상태를 보이고 있음. 그러나 ‘침체 또는 매우 침체’ 단지는 33개(27.3%) 정도임. 응답한 농공단지에서 약 1/3 정도는 경영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표 4-5. 운영업체 상태

단위: 개, %

구 분	매우 침체	다소 침체	보통	다소 원활	매우 원활	합계
빈도	7	26	51	27	10	121
비율	5.8	21.5	42.1	22.3	8.3	100.0



- 농공단지별 주력 업종에서는 일반 제조업이 108개(89.3%)로 가장 비중이 높고, 농산물 가공업이 9개(7.4%), 수산물 가공업 4개(3.3%)임. 지역의 농산물과 특산물을 활용한 업체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아 업체의 경영성과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작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지역 농산물과 특산물을 이용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집적한 단지의 조성 및 운영이 필요함.
- 기존 농공단지의 입주업체는 대부분 일반 제조업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화농공단지 관련 지역특산품 활용 제조업의 비중은 낮음. 따라서 업체의 업종 제한과 해당업체 비중 조건 등으로 전환에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음.
  - 단지 밖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존 지역 특산물 관련 제조업체의 흡수 방안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현재 농공단지 및 특화농공단지가 지역별로 미흡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현실적 실태를 고려하여 향후 특화농공단지를 조성할 경우 초기 계획 단계부터 조성 후 입주업체 가동 방안에 이르는 종합적인 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표 4-6. 운영업체 주력 업종 현황

단위: 개, %

구 분	농산물 가공업	수산물 가공업	일반 제조업	합계
빈도	9	4	108	121
비율	7.4	3.3	89.3	100.0

## 2.1. 특화농공단지 인식과 지정요건

- 농공단지 입주업체 대표자들의 특화농공단지에 대한 인식 정도에서 ‘잘 알고 있음’은 17.4%(21명), ‘조금 알고 있음’ 30명(24.8%)으로 특화농공단지에 대한 인식 수준은 42.2%이며, ‘모름’은 36명(29.8%)으로 인식 정도가 저조함.

표 4-7. 특화농공단지 인식

단위: 개, %

구 분	모름	들어는 봤음	조금 알고 있음	잘 알고 있음	합계
빈도	36	34	30	21	121
비율	29.8	28.1	24.8	17.4	100

- 특화농공단지 규정 조건에서 지역특화업종의 비율에서 ‘비중 인하’는 62명(51.2%)으로 가장 높고, ‘현행 유지’는 44명(36.4%)으로 나타남. 전반적으로 현행 특화농공단지 규정요건이 완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음.

표 4-8. 특화농공단지 지정요건 의향

단위: 개, %

구 분	비중 인상	현행 유지	비중 인하	모름/무응답	합계
빈도	6	44	62	9	121
비율	5	36.4	51.2	7.4	100

- 특화농공단지에 대한 인식수준과 지정에 필요한 동일한 업종의 제한 비율과 관련하여 인식 수준은 낮은 수준이고, 특화농공단지 지정의 요건인 동일 업종 제한 규정은 완화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화농공단지에서 지역특화업종의 비중이 80%보다 완화되어야 하는 이유로 ‘현실적 여건 고려(현실성 결여)’가 48명(77.4%)으로 가장 높고, 2순위에서는 ‘단지의 경쟁력 강화’가 10명(38.5%)으로 가장 높음.
- 농촌지역의 특성과 입주업체의 능력을 고려하여 현행 특화농공단지의 기준이 완화될 필요가 있음. 그리고 비중의 인하와 함께 관련 업체(연관 업체)도 지역특화업종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한 고려도 필요함.

표 4-9. 특화농공단지 기준 완화 이유

단위: 개, %

1순위	빈도	비율	2순위	빈도	비율
현실적 여건 고려 (현실성 결여)	48	77.4	현실적 여건 고려 (현실성 결여)	1	3.8
관련업종간 파급효과 극대화	3	4.8	관련업종간 파급효과 극대화	4	15.4
개별 경영의 비용 절감	1	1.6	개별 경영의 비용 절감	2	7.7
제조업 등 인력수급 편리	2	3.2	제조업 등 인력수급 편리	9	34.6
단지의 경쟁력 강화	8	12.9	단지의 경쟁력 강화	10	38.5
합계	62	100.0	합계	26	100.0

- 특화농공단지의 지역특화업종 비율의 인하 범위에서 응답자의 31.4%(38명)는 50~60% 정도를 가장 높게 선호하였고, 50% 미만도 36명(29.8%)으로 나타남.
- 기존 농공단지의 특화농공단지로 전환될 필요성에서 응답자의 90.1%(109명)는 ‘없다’라고 하였음. 일반 제조업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특화업종 비율 80%를 특화농공단지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규정은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음.

표 4-10. 특화농공단지 기준 완화 범위

단위: 개, %

구 분	50% 미만	50~60% 미만	60~70% 미만	70~80% 미만	모름 /무응답	합계
빈도	36	38	18	22	7	121
비율	29.8	31.4	14.9	18.2	5.8	100.0

표 4-11. 특화농공단지 전환 필요성

단위: 개, %

구 분	있다	없다	합계
빈도	12	109	121
비율	9.9	90.1	100.0

## 2.2. 농공단지(특화농공단지) 관리

- 농공단지의 종합적인 관리와 관련해서 응답자의 85.1%(103명)가 ‘창구 일원화 지정’을 선호하였고, 해당 부처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78명(64.5%)으로 가장 높음. 고유 업무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농공단지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한 창구의 마련이 필요함.

표 4-12. 농공단지 운영 담당 부처 의향

단위: 개, %

구 분	농림축산 식품부	국토 교통부	산업통상 자원부	기획 재정부	환경부	지자체	중소 기업청	합계
빈도	9	2	78	21	4	4	3	121
비율	7.4	1.7	64.5	17.4	3.3	3.3	2.5	100.0

표 4-13. 농공단지 운영 창구 일원화 의향

단위: 개, %

구 분	창구 일원화	현행 그대로	합계
빈도	103	18	121
비율	85.1	14.9	100.0

- 농공단지의 관리주체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변경된 후 농공단지 운영과 발전에 도움이 정도에서 ‘매우 도움’은 24명(19.8%)이고, ‘다소 도움’은 58명(47.9%)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관리주체 역할에 만족하는 비율은 67.7%로 조사되었음. 농공단지의 관리주체에 대해 현행 제도에 절반 이상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주체로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이 지역의 농공단지 활성화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잦은 보직이동 등의 현실적 한계를 극복해야 함.

표 4-14. 관리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농공단지 활성화 기여도

단위: 개, %

구 분	빈도	비율
전혀 도움 안됨	7	5.8
다소 도움 안됨	8	6.6
변화 없음	23	19.0
다소 도움	58	47.9
매우 도움	24	19.8
모름/무응답	1	.8
합계	121	100.0

-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특화농공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사전에 지역내 기존 단지와의 갈등관계와 단지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운영 방안의 마련이 요구됨.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정책의 일환으로 지역에 단지를 조성할 경우 원활한 단지의 운영과 그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임.

### 2.3. 농공단지(특화농공단지) 활성화와 6차산업화 연계

- 현행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방안에서 ‘제조+물류+체험+서비스 제공’이 종합적으로 달성되는 융·복합화 된 단지조성이 38%(46명)로 가장 높고, ‘기존 농공단지의 운영방안 유지’가 27.3%(33명), ‘전문화된 산업단지(동일업종 집적화)’ 27.3%(33명)가 선호함.

표 4-15.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운영방안

운영 방안	단위: 개, %	
	빈도	비율
제조 + 물류 + 체험 + 서비스 등 융·복합화	46	38.0
전문화된 산업단지(동일업종의 집적화)	33	27.3
기존 농공단지 운영방안 유지	41	33.9
업종제한을 없애고 소규모 가족단위업체도 참여 가능하게	1	.8
합계	121	100.0

- 또한, 농공단지의 관리주체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변경된 후 운영의 변화에서 ‘다소 도움 또는 매우 도움’이 67.7%(82명)로 조사됨.
- 관리주체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고, 단지의 종합적인 관리와 현안 문제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에서 창구의 일원화가 필요함.

- 수요자의 선호와 단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생산 중심의 단지에서 융·복합화된 테마형 단지의 조성이 필요함.
- 농공단지의 지정과 운영에서 가장 필요한 요소로 ‘산·학·연 등 협력 클러스터화 등에 인센티브 확대 지원’이 1순위에서 32.2%(39명)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단지 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전 심의 및 계획수립 등 농공단지 계획제도 도입’이 24.8%임. 그리고 2순위에서는 ‘단지 운영협의체의 중간지원 조직화에 대한 지원’이 55.9%(38명)로 가장 높음.

표 4-16. 농공단지 지정과 운영에서 가장 필요한 요소

단위: 개, %

1 순위	빈도	비율	2 순위	빈도	비율
현행 그대로 유지	16	13.2	현행 그대로 유지	2	2.9
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전 심의 및 계획수립 등 농공단지 계획제도 도입	30	24.8	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전 심의 및 계획수립 등 농공단지 계획제도 도입	12	17.6
산학연 등 협력 클러스터화 등에 인센티브 확대 지원	39	32.2	산학연 등 협력 클러스터화 등에 인센티브 확대 지원	13	19.1
기존 단지의 특화단지 변경에 대한 지원	8	6.6	기존 단지의 특화단지 변경에 대한 지원	3	4.4
단지 운영협의체의 중간지원 조직화에 대한 지원	26	21.5	단지 운영협의체의 중간지원 조직화에 대한 지원	38	55.9
규제완화	1	.8	합계	68	100.0
폐수처리 지원	1	.8			
합계	121	100.0			

### 3. 정책수요

#### 3.1. 단지 조성

- 기존 농공단지의 입주업체는 대부분 일반 제조업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화농공단지 관련 지역특산품 활용 제조업의 비중은 낮음. 따라서 기존 농공단지의 특화농공단지 업체의 업종제한과 참여 업체의 비율 한정 문제 등으로 전환에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음.
  - 단지 밖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존 지역 특산물 관련 제조업체의 협력 방안에 대한 지원 방안이 필요함.
- 현재 일반 농공단지 및 특화농공단지가 지역별로 미흡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현실적 문제를 고려하여 향후 특화농공단지 조성에는 초기 계획에서 조성후 입주업체 가동 방안에 이르는 종합적인 사전계획을 바탕으로 두고 계획이 실시되어야 할 것임.

#### 3.2. 특화농공단지 지정요건

- 농촌지역의 특성과 입주업체의 능력을 고려하여 현행 특화농공단지의 기준이 완화될 필요가 있음. 그리고 비중의 인하와 함께 관련 업체(연관 업체)도 지역특화업종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한 고려도 필요함.
- 특화농공단지의 지역특화업종 비율의 인하 범위에서 응답자의 31.4%(38명)는 50~60% 정도를 가장 높게 선호하였고, 50% 미만도 36명(29.8%)으로 나타남.



- 기존 농공단지의 특화농공단지로 전환될 필요성에서 응답자의 90.1%(109명)는 ‘없다’라고 하였음. 현실적으로 일반 제조업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에서 지역특화업종 비율 80%를 특화농공단지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규정은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음.
- 기존 농공단지와 신규 조성 특화농공단지 업체간의 갈등 문제를 사전에 조율하고, 특화농공단지 조성에 필요한 종합적인 계획단계가 반드시 요구됨.

### 3.3. 농공단지(특화농공단지) 활성화와 6차산업화 연계

- 수요자의 선호와 단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생산 중심의 단지에서 융·복합화된 테마형 단지의 조성이 필요함.
- 농공단지의 지정과 운영에서 가장 필요한 요소로 ‘산학연 등 협력 클러스터화 등에 인센티브 확대 지원’이 1순위에서 32.2%(39명)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단지 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전 심의 및 계획수립 등 농공단지 계획제도 도입’이 24.8%임. 그리고 2순위에서는 ‘단지 운영협의체의 중간지원조직화에 대한 지원’이 55.9%(38명)로 가장 높음.
- 단지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협의체의 중간지원조직화에 대한 지원 방안의 마련이 필요함. 현재 자치단체별로 조직되어 운영되는 협의체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협의체가 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조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원체계의 마련이 필요함.

## 제 5 장

---

### 노후 농공단지 개·보수 제도 개선

#### 1. 노후 농공단지의 문제점<sup>5)</sup>

- 노후 농공단지의 개·보수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은 최근에 수행된 관련 연구와 정부의 정책 및 현장의 이해관계 당사자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제시하였음. 그리고 기존 농공단지의 집적화에 따른 인접도로 개설과 관련한 현안 문제는 협동연구를 추진하였음.
  - 최경환 외(2012)의 선행연구에서 제기된 기존 농공단지의 문제점을 정리하여, 특화농공단지의 활성화에 활용
- 노후 농공단지의 문제점으로 농공단지 인프라, 자금지원, 인력 및 복지시설, 생산 제품의 판로확대 방안, 농공단지 관리 등이 있음.
- 노후 농공단지 개·보수 문제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주요 문제점과 함께 농공단지 인프라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지역사례로 해결 방안을 제시함.

---

<sup>5)</sup> 최경환 외(2012)의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 및 재구성하였음.

표 5-1. 노후 농공단지 문제점

구 분	문 제 점
농공단지 인프라	단지 협소, 단지 주변도로 협소 환경시설 미흡, 공업용수 및 전력 공급 부족 공동폐수처리장 부족, 휴폐업 업체 처리 문제 노후단지 개·보수 국비지원 미흡 명칭변경(단지)
자금 지원	운전자금 지원 미흡, 각종 세제 혜택 미흡
인력 및 복지시설	교통수단 미비, 복지시설 및 주거시설 미흡 산업기능요원 및 외국인 인력 고용 확대 고용 관련 정책 지원 부족
판로 확대	정부 홍보 부족, 우선구매제도 활성화 미흡 물류 및 유통비용 지원 부족
농공단지 관리	업무 통합 일원화 미흡 지자체 관리 기능 강화 부족 지역산업 연계 부족, 단지협의회 활성화 미흡

## 1.1. 농공단지 인프라에 관한 문제

### 1.1.1. 단지 협소

- 30여 년 전 소규모로 조성되어 입주 업체의 사업 확장이나 필요 시설의 확충에 애로사항
- 건폐율 상향 조정, 인접한 지역으로 단지 확장 등 필요

### 1.1.2. 단지 주변 도로 협소

- 단지 조성 시 도로 폭을 좁게 설치하여 화물차 등 자동차 이동이 확대됨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고, 물류 운송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 주차장, 공동물류저장소 등 필요

### 1.1.3. 단지 시설 환경 개선

- 단지 내 도로는 지하채장 관할이므로 도로 개·보수, 가로등 전기료, 조경시설을 지자체에서 지원 요구
- 자연재해 대비 단지 내 시설 점검 및 보완

### 1.1.4. 공업용수 및 전력 공급

- 지하수로는 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우며, 전력도 안정적으로 공급 필요

### 1.1.5. 공동폐수처리장 설치

- 환경법 강화에 따른 법규 준수 애로 및 비용 부담
- 공동폐수처리장 설치 요망

### 1.1.6. 휴·폐업 업체 처리

- 휴·폐업 업체의 장기 방치로 단지 관리에도 애로
- 시장·군수가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추진 실적은 미미
- 부실기업 정리기간을 단축(3년 ⇒ 1년)
- 폐업으로 방치된 공장을 자산관리공사로 이전하는 등 적극 처리 요망
- 농공단지 홍보로 휴·폐업 업체의 대체입주 적극 추진

### 1.1.7. 농공단지의 용도 변경은 신중 추진

- 농공단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단지는 타 용도로 전환하도록 하되, 정밀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최종 판단을 하도록 함.

### 1.1.8. 노후단지 개·보수 시 국비지원 확대

- 노후 농공단지 개·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비 50%, 지방비 50%로 조달하게 되어 있으나, 지자체의 경우 부담 능력이 없어 농공단지 개·보수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을 미루는 경향임.
- 지자체장이 선출직이어서 새로운 사업에 중점을 두는 것도 애로사항임.

### 1.1.9. 명칭 변경

- 농공단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는 주장임.

## 1.2. 입주업체 자금 지원에 관한 문제

### 1.2.1. 운전자금 지원 확대 희망

- 정책자금 지원 확대 및 절차 간소화
- 공시지가 인상을 통한 담보력 확대
- 저리 융자 및 신용대출 확대

## 1.2.2. 각종 세제 혜택 확대

- 공장의 운영에 실질적인 경영자금 및 시설자금의 지원

## 1.3. 인력 및 복지시설에 관한 문제

### 1.3.1. 통근에 필요한 교통수단 미비

- 공용버스의 배차시간 조정 및 노선 변경 또는 증설

### 1.3.2. 근로자 복지시설 설치

- 식당, 휴게실, 운동시설 등
- 기숙사, 아파트 등 주거시설
- 유치원 등 보육시설은 정부 사업(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방안 강구

### 1.3.3. 산업기능요원 및 외국인 산업연수생

- 외국인 산업연수생 적용 대상 기업의 규모를 확대 요망(예: 30인 ⇒ 50인)
- 외국인 연수생의 이탈 방지를 위한 장치 마련 필요
- 외국인 연수생 체류기간 연장

### 1.3.4. 공동 취업망 운영

- 지자체 홈페이지 활용, 홍보 강화

### 1.3.5. 고용 관련 정부 정책의 확대

- 고용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 교육훈련비 국비지원

### 1.3.6. 공공근로, 희망근로 인력 배정

- 정부의 각종 근로사업을 농공단지에도 배정 요망

## 1.4. 판로 확보에 관한 문제

### 1.4.1. 정부의 홍보

-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 및 판매 알선

### 1.4.2. 우선구매제도 활성화

- 수의계약제
- 지역 기업의 제품을 구입하는 것은 지자체장과 담당 공무원의 적극적 자세가 중요하나, 지자체장의 관심도에 따라 구매 여부나 구매 규모가 달라지고, 담당 공무원은 감사를 의식하여 소극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안정적 판로 확보에 애로가 있음.

### 1.4.3. 물류비 및 유통비용 지원

-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물품 유통비, 포장비 등 지원 요망

## 1.5. 농공단지 관리에 관한 문제

### 1.5.1. 중앙정부의 관련 업무 통합 일원화

-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자원통상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 다수 부처가 업무를 분산 추진하여 지자체 담당자 및 농공단지 관계자 등은 혼란을 초래함.

### 1.5.2. 지자체(시장·군수)의 관리 기능 강화

- 시장·군수가 관내 농공단지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도함.

### 1.5.3. 입주 업종 선정 관련

- 입주업종 제한에 대하여는 다양한 의견이 있음. 현실적 여건을 최대한 고려하여 현재 입주업종 제한 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과 함께 주력 업종과 관련한 업종의 인정도 필요함.
  - 제조업 단지에서 생산한 제품의 유통과 관련한 물류업체도 단지에 입주한 동종업체로 인정할 필요가 있음.

### 1.5.4. 단지협의회 구성 및 활성화 유도

- 입주업체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수집 및 업체 간 친목 도모와 정보 교환 등을 원활하게 하여 단지의 시너지 효과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지별 협의회가 구성·운영될 필요가 있음.



### 1.5.5. 지역산업과의 연계

- 일부 품목을 제외하면 물량 자체가 적어 동일 시·군 내에서 필요한 원료 농수산물을 공급하기 어려우므로 각종 정책 사업을 연계하여 규모의 경제나 시너지 효과를 확보하도록 함.

### 1.5.6. 농공단지의 역할 재정립

- 농어촌지역 여건이 농공단지사업이 처음 도입될 당시와는 크게 달라졌으므로 농공단지사업의 목표와 사업내용도 재정립될 필요가 있음.

## 2. 노후 농공단지 인프라 제도 개선

### 2.1. 농공단지 개·보수 지원 기준 명확화

#### 2.1.1. 실태

- 노후농공단지를 단순히 조성년도를 기준으로 선정하기보다 실제 노후화 정도를 파악하여 개·보수 시설과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선결 과제임.

#### 2.1.2. 대책

- 지자체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자체 차원의 노후농공단지 개·보수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에 근거하여 노후농공단지 개·보수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 2.2. 공용 오폐수 처리시설

### 2.2.1. 실태

- 단지 조성이 오래된 경우 오폐수처리시설이 노후화되어 개·보수하거나 확장 설치해야 함.
  - 식품 관련 제조업체의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원이 필요함.
- 최근 환경오염 규제 기준이 더욱 강화되어 이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함.
- 공용오폐수처리시설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설치비용을 입주업체들이 부담해야 하나 대부분 영세한 입주업체들에게는 큰 부담임.
  -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의 영세성과 기초 인프라 시설의 지원 당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더욱이 농공단지의 경우 입주업체수가 적어 소수의 입주 기업이 막대한 시설교체비용을 분담해야 하기 때문에 업체들이 공용오폐수처리시설 설치를 꺼림.
- 서천군의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개·보수에 약 63억 원이 소요되지만, 군에서 해당 입주업체가 개·보수 금액의 10%(6억 3천만 원) 부담 조건으로 사업의 추진이 미흡한 실정임.
  - 해당 단지의 개별 업체의 규모와 능력에서 개·보수 금액의 일부분을 부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반면, 금산군의 경우 2012년 지역의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재·정비를 위해 18억 원의 예산을 자체 조달하여 추진하고 있음

- 현재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국비지원비율은 일반농어촌 50%, 추가지원농어촌 70%, 우선지원농어촌은 100%로 되어 있음.
  - 반면, 일반산업단지의 경우 수도권은 50%, 비수도권은 100%임.

## 2.2.2. 대책

- 농공단지의 경우에도 일반산업단지 수준인 국비지원 비율을 100%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 농공단지의 경우 사업 초기부터 농촌공업화 차원에서 접근했기 때문에 비수도권에 조성되었음.
  - 수도권지역에 조성된 것은 경기 안성 미양농공단지가 유일하며, 이는 초창기 시범사업 실시 시에 조성된 것임.
- 단지의 노후 인프라시설 개·보수 비용은 국비, 도비 및 지방비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2.3. 상수도 지원

### 2.3.1. 실태

- 기존 농공단지 내의 상수도 시설은 노후되어 있고, 관정을 통한 자체 해결 단지가 대부분이므로 식품과 음료제조업 업체가 활용하는 것은 부적합한 실정임.
- 단체급식, 완제품의 경우 식품 안전성과 위생에 대한 높은 수준의 규제에 부합되기 위해서는 상수도 시설의 지원이 필요함.

- 상수도 시설의 지원으로 제품 생산과 단지 생활용수의 안전성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음.

### 2.3.2. 대책

- 단지 운영에 필요한 필수 인프라인 상수도의 개선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하며, 광특회계 예산을 활용한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 2.4. 인접 도로 개설 지원

### 2.4.1. 실태

- 농공단지 조성 시 진입 도로는 정부의 지원으로 건설됨. 그러나 이후 단지의 추가 조성과 집적화 등으로 도로의 신설 또는 확·포장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나 국도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관할의 도로 개설과 확장에는 정부의 지원이 미흡함.
  - 지방자치단체 관리 도로는 지자체가 관련 비용을 부담해야 하나, 지자체의 재정수준에서는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되고 있음.
- 농공단지의 인프라 정비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농공단지 인프라 개·보수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함.
  - 기존 농공단지의 집적화에 따른 광역교통망과의 접근 도로시설을 개선하여 물류의 효율성 제고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기반시설과 관련한 사업에 요구되는 소요 비용은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준을 상회하는 현실적 한계성을 고려하여 정부의 지원이 요구됨.

## 2.4.2. 영주시 농공단지 사례 분석

### 가. 검토 배경

- 영주시에는 현재 적서, 휴천, 문수, 장수, 반구, 봉현 등 6개 농공단지가 운영 중에 있음. 개별 농공단지는 시기별로 분산되어 조성되었지만, 결과적으로 일정 지역에 집적화되어 조성되었음. 그리고 인접 광역교통망과의 원활한 접속에 따른 물류와 운영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한 인접도로의 개설이 시급한 현안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 영주시에는 기존 농공단지 인근에 추가적으로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기존 단지와 새로이 조성되는 단지가 일정 지역에 집적되면서 추가적인 연결 도로망의 정비가 필요함.
  - 현행 농공단지 지원과 관련해서 단지의 조성 시에 도로 건설은 지원이 가능하지만, 조성 후 타 단지와의 집적에 따른 도로 개설 지원제도는 미흡한 실정임.
-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요구됨.
- 재정적 애로사항과 미흡한 관련 법규의 체계를 보완하여 지역의 현안문제를 해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계기를 마련하는 방안의 마련이 주요한 검토 배경임.

### 나. 영주시 일반 및 농공단지 현황

- 영주시는 경상북도의 최북단에 위치하고 남북으로는 길고 동서로는 좁으며, 동쪽으로는 봉화군, 서쪽으로는 충청북도 단양군, 남쪽으로는 안동시와 예천군, 북쪽으로는 강원도 영월군과 접경을 이루고 있으며, 소·태백권 교

통의 중심도시임. 특히, 중앙선 철도와 중앙고속국도, 국도 및 지방도 등이 통과하고 있어 사통팔달의 교통망 구축과 함께 경북 북부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로 성장해 나가고 있음.

- 영주시의 광업 및 제조업 분야 산업종사자 수는 2011년 기준으로 사업체 수는 8,916개, 종사자 수는 31,789명으로 연평균 2.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그리고 본 사업구간이 위치하는 장수면과 문수면 일원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 수는 48개 업체로 종업원 수는 1,246명임. 현재 입주 중에 있는 반구농공단지과 추가로 33ha의 농공단지를 추진 중에 있음.
- 영주시의 기존 단지 간의 집적효과의 극대화와 업체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인근 고속도로를 활용한 물류의 원활한 지원을 위한 연계 도로의 개선이 시급한 현안임.
- 2012년을 기준으로 사업대상지역의 주요 간선도로망인 중앙고속도로와 국도 5호선, 국도 28호선으로 각 노선별 교통량 현황은 <표 5-2>와 같음.

표 5-2. 사업대상지역 주변 교통량 현황

단위: 대(차량)

구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영주IC~풍기IC	10,145	12,842	13,594	13,798	13,219	13,114
영주~장수(국도 28호)	9,776	9,698	10,044	10,337	10,340	10,757
영주~평은(국도 5호)	7,619	7,149	7,460	8,850	9,020	9,934

자료: 국토교통부 도로망 통계연보, 각 연도.

- 농공단지 연결 도로에 위치한 단지의 총 면적은 93만 9천㎡, 분양면적은 75만 5천㎡, 입주업체는 48개, 고용노동자는 1,246명 정도임.
  - 적서농공단지의 총 면적은 31만 3천㎡로 가장 크고, 다음으로 휴천농공

단지가 25만 3천㎡, 장수농공단지 22만 4천㎡, 문수농공단지 14만 9천㎡ 등임.

- 영주시의 농공단지들은 경북 북부지역의 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표 5-3. 장수면, 문수면 일원 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

단위: 천㎡, 개, %, 명

단지 명	총 면적	분양 대상	업체 수	가동률	종업원수
계	939	755	48	42	1,246
장수농공단지	224	164	38	79	286
적서농공단지	313	290	1	100	583
휴천농공단지	253	196	1	100	206
문수농공단지	149	105	8	100	171

#### 다. 농공단지 인접도로 개설 검토

- 인접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지자체에서 현안인 영주시의 사례로 비용을 산정해 봄. 계획노선은 적서, 휴천, 문수, 장수농공단지 및 반구전문농공단지를 연결하는 도로로써 주변 도로망(중앙고속도로 영주IC)과의 연계 체계를 구축, 교통소통 원활과 이동성 및 접근성 향상, 농공단지 입주자의 편의제공을 위한 사업임.
- 적서공단~영주IC 간 연결도로 개설 관련 사업 연장, 대상 행위, 협의 대상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음.
  - 4차로: 2.8km, 2차로: 1.0km
  - 대상 행위: 교통안전진단(교통안전법 시행령), 도로법(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3km이상 시도, 군도, 구도 1km이상), 사전재해영향성검토(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전략환경영향성검토(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문화재지표조사(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법률 제6조), 인허가, 지반조사, 철도 횡단에 의한 철도시설공단 협의, 국도 28호선 접속에 따른 국

도관리사무소 협의 등의 기준으로 분석하였음.

- 지역의 중요한 현안인 농공단지 집적화 지역의 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사전적으로 비용을 산정하고, 비용에 따른 지원방안의 검토가 필요함.
  - 인접도로 개선 비용은 시나리오별 320~590억 원 내외로 산출됨.
  - 인접도로 개설에 필요한 최소 금액은 교량과 터널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도로의 연결에 따른 비용임.
- 현행 단지 지원에 대한 세부지원 조건의 불합리성과 각종 규제에 대한 완화를 통하여 단지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함.
  - 현행 국도로 지정된 도로 이외의 도로는 지방도로 분류되어 지방자치단체가 개선에 요구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함.
  - 농공단지의 집적에 따른 대규모 단지 구성에 따른 인프라 시설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함.
  - 산업입지 지정요건에 특례조항 등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 라. 비용분담 방식(안)

##### ① 정부보조 + 지자체 + 광역자치단체 공동부담

- 현행 제도에서는 근거 법령이 없어 관련 법령의 정비를 통한 지원방안의 마련이 필수 요소임.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제29조(시설 지원) 항목에서 기반시설 지원과 관련하여 농공단지의 집적에 따른 도로 등 기반시설의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제29조(시설 지원)** ①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항만·도로·용수시설·철도·통신·전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대상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규모, 지원방법 등 기본적인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8.4]

- 그리고 기반시설 지원 대상에서 단일 단지의 규모(30만 제곱미터 이상)에 추가적으로 집적된 규모가 30만 제곱미터 이상 농공단지 관련 항목도 특별조항으로 정비가 되어야 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7조(기반시설의 지원)** ②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단지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산업단지
    - 가. 법 제37조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지 아니하였을 것
    - 나. 산업단지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규모 이상일 것
    - 다. 낙후지역 개발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산업육성이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 개발 중일 것
  2. 제1호 외의 산업단지 중 심의회에서 산업입지정책에 따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단지
- ③ 제10조의4제1호가목 및 제45조의3제2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시설을 지원하는 비용에 상응하는 비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도 부담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20> [전문개정 2008.9.25]

- 영주시의 경우 관련 법률의 정비를 사업의 사전 조건으로 하고 법률의 정비 후 도로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함.

현행	개선(안)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농공단지 집적에 따른 시설지원 항목 추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단일 단지 외 집적 규모가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단지도 지원 항목 추가

## ② 광특회계에서 농공단지 인프라 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농공단지 기반시설과 시설 정비와 관련한 사업에 포괄보조금사업 예산을 활용할 수 있지만, 예산 규모가 최대 30억 원 정도이므로 현실적으로 제약이 있음.
  - 따라서 총 사업비의 상한선에 대한 규제를 정비하고, 사업에 대한 사전 사업성을 관련 중앙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검토를 받는 방안이 필요함.
- 영주시 사례의 경우 산업법에 관련 규정의 마련과 함께 포괄보조금사업의 예산 상한에 대한 규정의 변경을 통한 사전 법령 정비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사업비의 규모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규모이므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

## ③ 기초 지방자치단체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 부담

- 사전적 법령의 개편이 없는 현실적 상황에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지만, 현실적으로 소요 기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음.

#### ④ 정부 + 기초 지방자치단체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 공동부담 + 입주업체 적립금 공동분담

- 농공단지 지원 관련 제도의 정비 후 정부지원과 함께 지자체, 광역지자체 및 해당 관련 단지 입주업체가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인접도로를 개설하는 방안
  - 정부의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진행이 어려운 문제가 있음.
- 단지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현안인 인접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의 개정과 함께 광특회계 관련 예산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임.

#### 마. 기타 고려사항

-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 본 사업의 실시 전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함.
  -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건설사업, 정보화 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 중기재정지출이 500억 원 이상인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 만약 영주시의 현안인 농공단지 인접도로 사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수반된다면 예비 타당성 조사에 대한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함.
- 예비 타당성 조사의 정의 및 대상 사업
  - 예비 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평가임.

그림 5-1. 영주시 농공단지 인접도로 개설 위치도



## 2.5. 기타 편의시설 지원

### 2.5.1. 실태

- 농공단지의 인력 수급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업체 경영을 제고하여 지역경제에 파급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입주 인력이 활용하는 편의시설의 확충과 개선이 필요함.
  - 편의시설에는 휴게시설, 식당, 슈퍼마켓, 공동 기숙사, 탁아소(유치원) 등이 있음.
- 속초시 대포농공단지의 경우 ‘공동 직장어린이집’ 조성사업을 추진함.
  - 소요예산 17억 원에서 시설 건립비는 시의 지원금(16억 원), 유아 용품비(9천만 원)는 참여 업체 자부담으로 현재 진행중에 있음.
  - 공동 기숙사는 비용 문제로 단지 근처 원룸을 매입하여 유상임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업체의 경영과 근로자의 편의를 최대한 배려하여 각종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음.
  - 또한,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단지 내 체험장, 박물관 등이 포함된 ‘동해안젓갈콤플렉스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사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면 직원들의 편의시설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담하고 운영과 실비는 해당 업체가 부담하는 방식을 이용하고 있음.

### 2.5.2. 대책

- 광특회계 등 재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입주업체의 자부담률을 높이기 위한 적립금을 조성하여 활용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음.

## 제 6 장

### 특화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 1. 특화농공단지 비전 및 기본 방향

##### 1.1. 비전 설정

#### 1차·2차·3차 산업과 문화가 융·복합화 된 창조적 산업공간화

- 기존 일반농공단지는 생산기능에만 집중하고 있어 문화가 융합된 복합화 공간으로 전환이 필요함. 즉, 6차산업화와 연계된 융·복합화 공간으로 변모 될 필요가 있음.
- 지역의 농공단지가 단순한 생산기지의 역할이 아니라 문화가 공존하는 삶의 터전으로 변신이 요구됨.
- 일하고, 찾아가고 싶고, 즐기고 싶은 공간으로의 탈바꿈이 시대적 요청임.

## 1.2. 기본방향

- 1차·2차·3차 산업의 융·복합화 공간
- 활력 넘치는 공간을 위한 체계적인 거버넌스 구축
-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혁신역량 강화

## 2. 특화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 2.1. 1차·2차·3차 산업의 융·복합화 공간을 위한 과제

#### 2.1.1. 입주규제 완화를 통한 6차산업화 단지로 발전

##### 가. 현행

- 산업단지 이용에 관한 현행 규제의 완화가 필요함. 즉, 단지 내 토지 이용에 관한 규제로 현재는 단일 용도의 토지 이용이 원칙임. 농공단지 내 생산 지역에는 100% 생산과 관련한 시설만 입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산업단지 용지는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으로 구분되고 각각의 구역별로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음.
  - 산업시설구역은 공장, 지식산업관련시설, 문화산업 관련시설 등이 입주할 수 있음.
  - 지원시설구역은 주거, 문화 및 환경시설 등이 입주할 수 있음.
  - 공공시설구역은 교통시설, 용수공급시설, 공원녹지시설 등이 입지함.
- 따라서 산업단지의 용지별 구분으로 생산시설과 편의시설 등 시설 간 집적

화되어 입주가 어렵고 작업장과 생활 편의시설이 격리되어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음.

\* 관련 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6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⑥ 제5항제3호에 따른 용도별 구역은 산업시설구역·지원시설구역·공공시설구역 및 녹지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시설구역은 용도별로 세분할 수 있다.

## 나. 문제점

- 단지조성 계획 시 지원시설 용지로 지정된 부지가 아니면 편의점, 식당, 문화시설 등의 시설은 단지 내 다른 용지에 입주할 수 없음.
- 종사자들은 편의점이나 식당을 이용하기 위해서 자동차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편의시설의 부족과 불편으로 근무 기피현상이 발생함.
  - 농공단지 내 근무 인력의 충원에 애로사항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 현재 근무하는 근로자의 복지향상과 신규 취업자의 선호에 맞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
- 용지별 입주 업종의 제한으로 인해 융·복합산업 등 새롭게 등장하는 산업구조에 신속하고 적합한 대응에 한계가 있음.
  - 제조·판매·관광이 한 구역에서 이뤄지는 융·복합산업은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임.



## 다. 개선방향

-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계획입지 관련 부처 간의 논의한 결과를 보면 산업·지원·공공시설의 복합이 가능한 ‘복합용지’ 지역을 산업단지에 도입하기로 함. 이를 위해 산업법과 산집법을 2014년 6월에 개정하기로 계획되어 있음.
  - 현재는 산업, 지원, 공공시설용지로 분리되어 있는 것을 모든 시설의 복합입주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임.
- 따라서 농공단지에서도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 단일 토지 이용을 복합 토지 이용 구역으로 허용되어야 함.
- 현재의 농공단지와 신규 조성단지는 1차, 2차, 3차 산업이 융·복합화 된 6차 산업화 단지로 재편하여 경쟁력과 활력을 도모해야 함.
  - 신규로 조성되는 6차산업화 단지의 경우 국비 지원 단가를 인상하고,
  - 6차산업화 특화농공단지에는 시설 및 운전자금의 지원이 확대되어야 함.
- 지역의 특산물과 지역 고유문화가 연계된 특화농공단지의 조성으로 산업과 문화가 공존하는 산업단지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함.

## 라. 사례

### (1) 구례 용방농공단지(자연드림파크): 단일 핵심주체에 의한 6차산업화 지향

- 개요
  - 용방농공단지의 핵심주체는 iCOOP생활협동조합이며, 단일 핵심주체가 농공단지의 6차산업화를 지향하고 있고, 구례군 지방자치단체 등은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하고 있음.

- 2011년 7월에 기공을 하여 2013년 6월에 완공하였음.
- 구례 용방농공단지는 지역특화농공단지가 아닌 일반농공단지인데도 불구하고 특화농공단지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음.
- iCOOP생활협동조합이 주도적으로 단지의 입주기업을 유치하고 있음. 유치업종은 식료·음료제조업, 물류 서비스업 등이 있음.
  - 아이쿱라면, 쿵서비스, 아이쿱양조, 게스트하우스, 쿵도우(베이커리), 맘씨(오리가공), 자미원(육계가공), 구례군(쌀제분), 쿵푸드시스템(전분 &스낵), 미씩(발아현미), 올곧은(한과),
- 지원시설에는 기숙사, 지원센터, 체험장, 판매장, 한옥마을, 운동장 등이 있음.

#### ○ 장점

- 생활협동조합의 정신에 입각한 사업투자에 따른 지속 가능성 담보
- 단일 주체가 6차산업화를 구축하기 위해 공단 전체를 구상하고 추진하기 때문에 1차, 2차, 3차 산업의 융·복합화 추진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음.
- 단지는 구례군 농업과 지역경제와의 밀착도가 높음.
- 지역의 생산 농산물을 생활협동조합에 납품하여 생산자의 판로확대와 추가적으로 지역의 친환경농업이 확대되는 기회가 발생하고 있음.
- ‘자연드림파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산업단지라는 이미지가 없고, 문화와 레저의 공간처럼 느껴져 이미지 제고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

#### ○ 단점

- 단일 주체가 주도하는 유형으로써 모든 농공단지에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초기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이 부재한 상황에서는 사업의 추진 자체가 어려운 현실임.
- 사업 주체의 경영 상황에 따라 단지의 운영이 결정되므로 경영의 리스크와 단지의 영속성이 밀접한 관계가 있음.

<구례자연드림파크(구례용방농공단지)>

- 위치: 전라남도 구례군 용방면 죽정리 403
- 면적: 149,336m<sup>2</sup>(45,000평)
- 단지 개발 시행자: 전남 구례군
- 핵심주체: iCOOP생활협동조합
- 유치업종: 식료-음료제조업, 물류 서비스업 등
- 개발전략
  - 구례의 자연(지리산)과 연계된 Green & Blue Network 구축
  - ‘자연드림’ 브랜드 상품의 생산으로 고부가가치 창출
  - 자연체험, 식품생산 관람, 식품체험 등 도-농교류 활성화 거점
- 식품체험장 업종: 베이커리, 떡류, 막걸리, 김치류, 햄소시지류, 면류, 두부류, 과자, 한과류, 장류, 만두류



자료: 구례자연드림파크 내부자료. 2013

## (2) 속초 대포농공단지: 지자체와 농공단지협의회와의 협력을 통한 6차산업화 지향

### ○ 개요

- 지자체와 농공단지협의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6차산업화를 지향하고 있음.
- 대포농공단지는 제1농공단지, 제2농공단지, 제3농공단지로 이루어져 있음. 제1농공단지는 1991년에 조성되었고, 제2농공단지는 2009년 12월, 제3농공단지는 2012년 12월에 완공되었음.
- 해양수산 가공분야로 특화되어 있는 단지임.

### ○ 장점

- 단지 내 지자체 전담부서를 배치하였음(농공단지관리TF팀).
- 단지 내 농공단지협의회 사무실 입주와 협의회 회장의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현안에 대한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음.
- 전담부서와 농공단지협의회 간의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고, 단지 내에 박물관, 체험장 등을 설치하여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관광 상품을 제공하고, 공동어린이집 운영 등으로 후생복리를 강화하고 있음.
- 지자체와 협의회간의 협력, 지역산업정책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를 발휘하는 유형으로써 다른 농공단지에도 일반화할 수 있는 모델임.
- 오션 허브라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농공단지라는 이미지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함.

### ○ 단점

- 지자체 의존도가 매우 높아 지역정치 변화에 따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큼
- 단지 내 협의회와 입주기업들의 자체적인 노력과 운영비 등에 대한 자립화가 아직은 미흡한 실정임.
- 기숙사 등의 시설이 없어 독신근로자나 외지 직원 수용에 한계가 있음.

<속초해양산업단지 Ocean Hub>

- 위치: 강원도 속초시 대포동 942
- 면적: 382,902m<sup>2</sup>(116,030평)
- 단지 개발 시행자: 강원 속초시
- 유치업종: 해양수산가공(53개 업체: 젓갈류, 코다리 등), 금속류(19), 고무플라스틱(7), 목재(3), 기타(20)
- 핵심주체: 속초시, 속초시 농공단지협의회
- 특성
  - 동해안 젓갈 클러스터
  - 수산가공, 관광, 가공체험이 융·복합화된 산업공간
- 부대시설: 동해안젓갈 콤플렉스(젓갈박물관, 젓갈 체험장, 공동 직장어린이집, 관리사무소, 속초시 농공단지 협의회 사무실)



자료: 속초시 내부자료. 2013

### (3) 고창 복분자클러스터: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한 융·복합화 지향

#### ○ 개요

- 2013년 6월에 완공하고 분양 중임.
- 고창군은 복분자라고 하는 지역특산물을 전략적으로 선택함. 복분자에 대해 각종 정부사업을 집중적으로 투자함으로써 복분자클러스터를 형성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음.
- 음식료품,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이 입주하게 되어 있으며, 이중 50% 이상은 복분자 관련 업체가 입주하여야 함.

#### ○ 장점

- 지자체가 복분자에 대해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복분자 클러스터화를 추진함.
- 복분자에 대한 전담부서(지역전략과)가 있어 효율적 행정이 가능함.
- 중앙정부의 각종 관련 사업을 복분자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지역의 특화 품목을 활용한 6차산업화의 유리성을 확보함.
- 투자된 각종 하드웨어 시설들이 농공단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연계와 시너지 발휘가 가능함.

#### ○ 단점

- 지자체 주도로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고는 있으나 복분자 관련 민간영역의 성장이 정체상태에 있어 과투자에 대한 우려가 있음.
- 농공단지 밖에 위치한 복분자 관련 기업들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소통하지 않으면 고립화될 수 있음.

<고창 복분자 특화농공단지>

- 위치: 전북 고창군 부안면 용산리
- 면적: 196,680m<sup>2</sup>
- 단지 개발 시행자: 전북 고창군
- 유치업종: 음·식료품,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핵심주체: 고창군**
- 특성
  - 복분자를 소재로 영위하는 업체를 50% 이상 배정
  - 복분자를 중심으로 한 가공, 관광, 가공체험이 융·복합화된 집적화 공간
- 인근시설: 복분자연연구소, 시험장 등 복분자클러스터 시설과 연계, 연구, 테마, 생산, 유통 집적화



자료: 고창군 내부자료. 2013

## 2.1.2. 수급관리와 특화의 체계화를 위한 지역특화농공단지 계획제도 도입

### 가. 현행

- 2008년 「산단 인허가절차 간소화 특례법」 제정 이후 산업단지 지정이 증가하였음.
  - 특례법 제정 이후 산업단지 지정기간이 약 2년에서 6개월로 단축됨.
  - 산업단지 지정면적은 1998년에서 2002년 8km<sup>2</sup>이던 것이 2003년부터 2007까지 70km<sup>2</sup>,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52km<sup>2</sup>로 증가함.
  - 2008년부터 2012년중 산업단지로 지정된 347개중 276개가 비도시지역임.
- 현재 운영중인 농공단지의 경영 상황과 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하는 특화농공단지의 수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성될 필요가 있음. 특히, 특화농공단지의 지정과 조성이 무계획적으로 진행된다면 기존 지역의 농공단지과 신규 특화농공단지의 경쟁력 하락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없음.

### 나. 문제점

- 농공단지의 지정 및 개발권이 지자체로 이관됨에 따라 지역별로 과도한 농공단지 조성으로 공급과잉 지적이 많음.
- 신규 농공단지 조성 시 기존 농공단지와의 경합성, 지역의 여건, 기존 농공단지과 지역주민, 지역기업인 등의 수요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함.
- 특히, 앞으로 신설되는 지역특화농공단지는 특화된 단지로 일정 분야의 기업이 80% 이상 입주해야 하는 강제조항이 있음. 그러나 조성 중인 단지에 대하여 특화도를 충족하기 위한 기업 유치 및 계획에 대한 점검이나 모니터링이 제도화되어 있지 못함.



- 이에 대한 철저한 실행능력이 있어야 특화농공단지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음.

**다. 개선방향**

- 지역특화농공단지 계획제도를 도입하여 수급관리, 타당성 검증, 특화단지의 추진 계획과 경과 관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농공단지 관련자를 대상으로 한 농공단지의 지정과 운영에서 가장 필요한 요소를 묻는 질문에서 ‘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전 심의 및 계획 수립 등 농공단지 계획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34.7%로 조사됨.
- 수요 범위 내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수급관리를 강화하고, 관리방식을 보완해야 함. 시·도별 신규 농공단지 지정은 농공단지 수급계획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함.
  - 지구별로 전문기관 수요 검증을 의무화 한 통합지침 강화
  - 수요 검증은 사업자 타당성 조사 → 예비 타당성 조사(KDI) → 산업단지 지정 신청 → 관계기관 합동 수요 검증(예: 농식품부·한국농촌경제연구원·한국농어촌공사, 산업단지공단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10조(입지 등의 적정성·타당성조사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6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 및 변경하기 전에 한국농어촌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를 참여시켜 입지의 적정성 및 개발의 기술적 문제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농공단지 지정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현지실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입지선정 기준에 의한 현지실사를 실시하게 하고 필요시 그 결과를 서면으로 도 농정심의회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사대상 농공단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단지조성비의 지원)**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영개발하는 농공단지 또는 민간의 실수요자가 개발하는 농공단지 중 전문단지 및 지역특화단

지의 조성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역특화단지의 조성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하지 않는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신규로 조성하는 농공단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비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예산, 단지규모 및 대상 입지 등 제10조에 따른 입지등의 적정성·타당성에 관한 조사를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지정 이후에도 개발이 촉진되도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사업시행자가 농공단지계획 수립 시 정한 사업기간을 경과하거나, 토지 소유자의 지정해제 요청 시 지정해제 추진이 필요함.
- 현 통합지침상에 있는 종합심사를 계획제도 내에서 의무화하여 특화농공단지의 검증을 강화하여야 함.
  - 현 통합지침상에는 종합심사가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되어 있음.
  - 종합심사를 의무화하기 위해 “~종합심사를 할 수 있다.”를 “~종합심사를 하여야 한다.”로 개정이 필요함.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개정안)

**제20조(종합심사)** 시·도지사는 시·군·구별 농공단지의 건설한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성 검토 및 사업성 검토 적합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종합심사를 할 수 있다.**

1. 농외소득원개발에 충실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체별 고용계획의 실현가능성 여부
2. 대기업, 자부담 중소기업의 경우 농공단지 입주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여부
3. 분양면적의 적정성 여부 및 이 지침에의 적합여부 등

## 2.2. 활력 넘치는 공간을 위한 체계적인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과제

-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지역특화농공단지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 농공단지를 관리할 전문기관을 두어 중앙단위의 체계적인 관리 강화가 필요함.
- 농공단지협의회를 농공단지 관리 및 지원을 담당할 중간지원조직화하여 지역단위의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함.

### 2.2.1. 특화농공단지 관리 컨트롤 타워로서 농림축산식품부 역할 강화

#### 가. 현행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공단지의 부지 조성 등 개발, 노후화된 단지 개·보수 등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광특회계)으로 지원함.
- 산업통상자원부는 농공단지의 입주업체에 운전·시설자금을 융자 지원함(중소기업진흥기금).
- 2011년 5월 총리실 주관 농공단지의 제도 개선에 따라 신규 단지 조성에 있어 일반·전문 농공단지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2013년부터 특화농공단지만 지원하고 있음.
- 2013년 8월에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산업단지와 관련한 계획입지 정책을 논의하였으나 최종 대책에서 농공단지의 발전방안은 제외되었음.

- 2013년부터는 지역특화농공단지 이외의 농공단지는 신규조성하지 않는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기존의 업무는 단지의 신규 조성보다는 기존 단지의 활성화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임.

#### 나. 문제점

- 농공단지 관련 업무를 국토교통부 등 4개 부처가 분담하고 있어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 발생 등으로 미 분양 및 휴·폐업체가 발생함.
  - 조성 후 관리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지자체이나 농공단지는 사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공단지의 조성과 노후단지 리모델링 등의 현안에 한정하여 관여하고 있음.
- 부실 농공단지의 주요 원인은 부지조성 이후 분양 등 입주업체 관리 미흡 등 농공단지 관리의 정책 부재에 있다고 할 수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업에 대한 관리와 지원에 관한 정책적 사업과 노후가 부족한 게 현실임.
  - 농공단지의 운영과 관련한 창구 일원화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 창구 일원화에 찬성하는 의견은 85.1%임.
  - 총괄 부서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가 담당하는 의견에는 부정적임.
    - 산업통상자원부가 총괄하기를 원하는 비율이 64.5%이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7.4%에 불과함.

#### 다. 개선방향

- 지역특화농공단지 지정, 관리 및 지원 업무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역할을 확대 강화해야 함.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데에만 역할을 한정하여 왔음. 그러나 지역특화농공단지는 농촌지역과 농촌지역자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정뿐만 아니라 사후관리에도 역할을 강화하여야 함. 따라서 농공단지의 입지, 조성, 운영 등 업무의 일원화로 공급측면과 수요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함.

- 농공단지에 대한 관심이나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도가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보면 특화농공단지에 대한 총괄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맡는 것이 타당하지만, 기업 운영 등에 대한 노하우가 부족한 측면이 있음.
  - 기업들에 관한 사항들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에서 그대로 담당을 하되, 농림축산식품부는 특화농공단지에 관하여 지자체, 농공단지협의회, 위탁관리기관 등과 연계 협력하여 관리적 측면에 대한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있는 농공단지 관련 규정을 「농촌산업육성법(가칭)」으로 이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농공단지 관리에 대한 법적 규정을 보완하고, 책임의식을 고취할 필요가 있음.
- 「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상의 농림축산식품부의 역할 확대 내용을 담아 개정함.
  - 제3조 업무 소관에서 3항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역할에서 지역특화농공단지의 개발과 관리에 대한 지원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개선안)

**제3조(업무소관)** 이 지침에 따른 업무의 소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농공단지 시책의 총괄 및 「산업집적법」에 따른 농공단지의 관리 및 입주기업체에 대한 지원 등(제4조, 제16조부터 제28조까지, 제29조 제1항, 제29조의2부터 제34조까지, 제41조부터 제50조까지)

2. 국토교통부장관: 「산업입지법」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정 및 조성 등(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제1항·제3항, 제11조, 제12조, 제17조, 제18조)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 개발의 지원 등(제9조제2항, 제10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29조제2항)과 **지역특화농공단지의 개발과 관리에 대한 지원 등**
4. 환경부장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농공단지의 환경관리 등(제35조부터 제40조까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는 부처의 장관: 공통사항(제1조부터 제3조까지)

## 라. 지역특화농공단지 관리주체로서의 농림축산식품부의 강점과 약점

### ○ 강점

- 농업·농촌과의 관계의 긴밀도가 높음.
- 농특산물을 비롯한 농촌지역자원을 활용한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도 있고, 수단도 있음.
- 농공단지를 조성할 경우 지원을 하고 있어 조성과 관리를 연계할 수 있어 효과적임. 최근에는 특화농공단지만 신규로 허용하고 있음.
- 농촌지역의 지자체와의 관계가 깊음. 지역사업을 통해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그리고 농업·농촌 관련 각종 지원책과 연계하여 지역특화농공단지의 관리와 효율성 증대를 위한 각종 정책수단들을 함께 동원해 지자체장의 성의를 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 약점

- 관리기관이 별도로 없어 농공단지에 대한 관리에 한계가 있음.
- 기업 전반을 관장하는 부처가 아니어서 기업에 대한 강한 추진력을 가지는데 한계가 있음.

표 6-1. 지역특화농공단지에 대한 관리주체로서 중앙부처 비교

구분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관리기관	<p><b>약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리기관이 별도로 없어 농공단지에 대한 관리에 한계가 있음.</li> </ul>	<p><b>강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산업단지관리공단 등이 있어 유리함(그러나 이러한 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농공단지를 왜 방치하였는지 의문임).</li> </ul>
농업·농촌과의 관계	<p><b>강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특산물을 비롯한 농촌지역자원을 활용한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도 있고, 수단도 있음.</li> </ul>	<p><b>약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연고사업과 같은 사업을 통해 일부 시행한 바 있음. 그러나 현재는 시군에 넘긴 상태임.</li> <li>- 기본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시·군단위의 정책과는 연계가 부족함.</li> </ul>
집행능력	<p><b>중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공단지와 관련하여 조성쪽에 만 예산이나 조직이 있음. 향후 이에 대한 보완이 되어야 성공적인 관리가 담보될 수 있음.</li> </ul>	<p><b>강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공단지를 관리할 예산과 조직을 가지고 있다고 봄. 그러나 농공단지에 대해 예정을 갖고 발전시킬 열정들이 있을지는 의문시됨</li> </ul>
기업관리	<p><b>약점&amp;중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식품산업을 관장하면서 기업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음. 그리고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에 대한 인식은 농촌 지역경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기업컨설팅쪽을 강화하고 있어 예산과 인력이 보강된다면 보완 가능할 것으로 보임.</li> </ul>	<p><b>강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 전반과 기업 전반을 관장하는 부처로서 가장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있다고 봄.</li> <li>- 농촌지역에 소재한 작은 기업에 이르기까지 정책적 배려를 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임.</li> </ul>
실적	<p><b>강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성은 많이 이루어졌고, 최근에는 특화단지만 신규 조성이 허용됨.</li> </ul>	<p><b>약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공단지에 대한 관심만 있었으면 하부기관을 통해 충분히 관리하고 개선시킬 수 있었으나 관심 자체가 없음.</li> </ul>
농촌지역의	<p><b>강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촌지역사업을 통해 농촌지역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li> </ul>	<p><b>약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촌지역의 지자체와는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특정 산업이 집</li> </ul>

구분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지자체와의 관계	<p>지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공단지의 관리주체가 된다면 다른 수단들을 함께 동원해 지자체장의 성의를 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임.</li> </ul>	<p>중된 곳을 제외하고는 관심영역에서 벗어나 있는 것으로 보임.</p>
종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열정은 있으나 조직과 예산이 아직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li> <li>- 그러나 관리주체가 된다면 조직은 만들 계획을 이미 가지고 있으며, 관리능력은 지속적으로 배양해야 하는 부분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능력은 있으나 예정, 열정, 관심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li> <li>- 효율성 중심의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그러다 보면 농촌지역은 자연스럽게 소외될 수밖에 없음.</li> <li>- 국가를 선도할 산업과 산단 위주로 관리해야 함.</li> </ul>

## 2.2.2. 관리업무를 위탁할 전문관리기관 지정

### 가. 현행

- 현재 농공단지에 대한 개발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고, 관리권자 또한 같음.
- 산업단지의 관리권자는 관리기관을 선정하여 산업단지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이원빈 외, 2009).
  - 현재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대부분 산업통상자원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 산업단지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음.
- 지방산업단지의 경우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거나 해당 지자체의 위탁을 받은 산업단지관리공단과 입주업체 협의회 등이 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나, 농공단지의 경우는 관리기관이 지정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있음(이원빈 외, 2009).



표 6-2. 산업단지 관리주체

단지 유형	개발권자	관리권자
국가산업단지	국토해양부장관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지방산업단지	시·도지사	· 시·도지사
농공단지	시장·군수·구청장	· 시장·군수·구청장

자료: 이원빈 외. 2009. 산업단지 관리 개선방안 연구. 산업연구원. p164 수정 보완.

#### 나. 문제점

- 농공단지의 경우, 지자체가 관리하거나 일부 협의체를 통해 간접적인 관리를 하는 경우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임.
- 현재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자체는 농공단지를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나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다. 개선방안

- 특화농공단지의 개발주체와 관리주체가 기초자치단체인데 효율적 개발 관리를 위해서는 이를 지원해 줄 전문관리기관에 위탁하도록 유도함.
  - 즉,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단지관리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입주기업협의회 등 중에서 적합한 곳을 지정하여 위탁하도록 함.

### 2.2.3. 농공단지협의회의 중간지원조직화를 통한 거버넌스 강화

#### 가. 현행

- 도 단위 농공단지협의회, 시·군 단위 농공단지협의회를 농공단지의 활성화, 개선방안 및 지원시책 수립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기구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6장 사후관리·운영

- 제41조(농공단지협의회 등)** ① 관할구역 내 농공단지의 활성화, 개선 방안 및 지원시책 수립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전담기구로서 시·도지사는 광역농공단지협의회(이하 “광역단위협의회”라 한다)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군·구 농공단지협의회(이하 “기초단위협의회”라 한다)를 각각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협의회 회장으로 구성하며, 대학, 연구소, 중소기업진흥공단, 생산기술연구원 등 지역의 전문가가 산·학·연 지역혁신 자문활동으로서 참여하고, 회장을 포함한 집행부 구성, 주요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한다.
- ③ 광역단위협의회 회장 또는 지역혁신 거점별 기초단위협의회 회장을 회원으로 하는 전국농공단지연합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또는 연합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와 연합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산·학·연 연계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나. 문제점

- 관련 지침상의 규정은 있으나 지자체에서 관리기관을 지정하지 않음.
- 농공단지 관련 업무의 전담기구로 지정(위탁)되지 않은 경우 농공단지협의회 역할이 불분명하고, 기업들의 참여도가 매우 낮음.
- 개별 단지 농공단지협의회와 시·군 단위 농공단지협의회가 구성조차 안 되어 있는 곳도 있음. 또한 구성된 경우에도 역할과 활동은 유명무실한 경우도 있음.

## 다. 개선방향

- 전국단위 농공단지연합회와 광역·기초 농공단지 협의회가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체계가 시급히 구축되어야 함.
  - 농공단지 관련자를 대상으로 한 농공단지의 지정과 운영에서 가장 필요한 요소를 묻는 질문에서 ‘단지 운영협회의 중간지원조직화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2.9%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 시·군 및 도 단위로 컨설팅 및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협의회와 민관협력 시스템 구축, 지자체별 농공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인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
  - 시·군 및 도 단위로 컨설팅 및 관리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 경상북도와 전라남도처럼 조례를 통해 협의회 역할의 제도화하면 더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경상북도 농공단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정: 2013. 9. 16.
- 주요내용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농공단지 발전과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41조에 따라 경상북도 농공단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 제3조(사무국 기능 및 역할) 사무국은 협의회 운영에 관한 일반사항 처리와 농공단지 지원협의회 운영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공단지 지원협의회 운영
  2. 인력, 자금, 기술 등 입주기업 애로사항 수렴 및 지원 협의
  3. 산학연 협력사업 과제 발굴 및 지원
  4. 농공단지 활성화 세미나·강연회 등 행사 개최
  5. 농공단지 발전 및 활성화 포럼 운영
  6. 기타 농공단지 발전 및 입주기업 지원에 관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업
- 제4조(지원절차 등)
  - 제5조(준용)
  - 부칙

- <전라남도 농공단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 발의연월일: 2013. 11. 15. 2014. 1.2(공표)
  - 주요내용
    - 농공단지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사무국 설치 및 예산 지원근거 마련
    - 농공단지협의회 사무국의 기능 규정
    - 예산지원 신청 절차 규정
    - 사무국 설치·운영에 관한 보고 및 검사에 관한 사항

## 2.3.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과제

### 2.3.1. 산학관연 협력클러스터화로 혁신역량 강화

#### 가. 현행

- 외부와의 협력시스템이 미흡함.
  - 농공단지와 외부의 대학, 연구소 등과 협력이 미흡함.
- 단지 내 다수의 기업이 입주해 있지만 유기적인 협력시스템을 갖추지 못해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
  - 단지 내 협력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음.
- R&D지원시설의 단지 내 집적 노력이 부족하고, 단지 내 필요 인력의 양성 및 취업 지원 기능도 미비함.

#### 나. 문제점

- 현재의 농공단지와 특화농공단지별 산학관연 협력클러스터를 형성하여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제반여건은 미성숙한 단계에 있음.
- 종사자들의 기업에 대한 애착심과 자부심 부족으로 인해 농공단지의 침체로 이어지고 있음.
- 또한, 농공단지와 특화농공단지 내 운영 업체를 지원할 기관이 현재 단지 밖에 상주하고 있어 신속한 지원체계가 미흡하고, 산업단지공단도 공장 설립 지원 역할에 국한되는 등 기업지원서비스 기능은 부족한 실정임.

#### 다. 개선방향

- 농촌산업구조 고도화 및 농촌지역경제와 연계성 강화를 위해 지역경제의 핵심 거점으로서 지속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생산 중심의 산업클러스터로 육성함.
  - 농공단지 관련자를 대상으로 한 농공단지의 지정과 운영에서 가장 필요한 요소를 묻는 질문에서 ‘산학연 등 협력클러스터화 등에 인센티브 확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43.0%로 조사됨.
  
- 특화농공단지와 기업, 대학, 연구소 등 관련 기관 간 유기적인 연계·협력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특화농공단지와 인근 단지 간의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이를 위해 단지 내 협의회를 중심으로 관련 전문가와 인근 단지와의 협력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학습활동, 네트워크 활동, 정보교환 활동 등을 할 경우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함.
  
- 관계 부처별 기업지원 사업을 추가적으로 발굴하여 산업단지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표 6-3.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주요 사업

구 분	사업 내용
<기업 R&D 지원>	
▪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농식품부)	사업단의 상품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 향토산업육성사업(농식품부)	사업단의 상품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 농촌산업집적화지구(농식품부)	지구의 상품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 (산업부)	산학연 공동 협력과제 지원
<인력양성 지원>	
▪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농식품부)	사업단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세미나, 선진지 견학 지원
▪ 향토산업육성사업(농식품부)	사업단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세미나, 선진지 견학 지원
▪ 농촌산업집적화지구(농식품부)	지구의 참여자에 대한 교육 및 품질관리에 대한 지원
▪ 산학융합지구 조성(산업부)	근로자 평생교육, 계약학과 운영 등 현장맞춤형 인재양성
▪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 (고용부)	공동수요조사-훈련-채용으로 이어지는 지역별 인력수급체계 구축
<기업지원서비스 확대>	
▪ 광역중간지원조직 지정 및 운영(농식품부)	시·도 단위로 총괄 조직을 지정하여 6차산업화 관련 지원기능 수행
▪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 (산업부)	기업주치의센터 운영
▪ 종합비즈니스센터(산업부)	수출지원센터, 제품홍보관, 다목적 회의장 등 기업복합 지원기능
<교육환경>	
▪ 교육 프로그램과 농공단지 연계 강화	마이스터고 등 취업연계형 학교와 연계하여 취업인턴제 실시 평생 취업교육 대학 등과도 연계
<네트워크 강화>	
▪ 6차산업화 주체간 연대 촉진(농식품부)	지역 농업인, 생산자단체, 제도가공업체, 체험관광파울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지원
▪ 지역컨소시엄 사업단 구성 지원(농식품부)	1차 농산물이 6차산업화된 품목을 중심으로 컨소시엄 사업단 지원

## 2.3.2. 지역의 거버넌스를 활용한 지자체 독자 운영 체제 강화

### 가. 현행

-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 및 기타 지역의 자원이 지자체 내에서 통합되지 않고 부서별 단독 과제 성격으로 운영되어 시너지 효과 및 확산효과가 미흡함.
- 지방자치단체의 부서별 업무에 대한 소통과 관심의 부족으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6차산업화와 관련된 사업의 추진에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음.
  - 각 부처별 사업을 통합하여 관리 및 운영한다면 자원과 시간의 낭비를 막고,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6차산업화를 추진할 수 있음.

### 나. 문제점

- 단지 조성 후 입주업체 유치가 미진함에도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지자체가 많음. 농촌지역의 지리적 불리성과 인력 수급에 대한 애로사항 등으로 단지에 입주하려는 업체가 없는 실정임.
- 외부 업체의 유치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농협 등 유관 기관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지역의 자원과 시설을 효율적으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함.
- 지자체의 단지 운영 역량이 미흡하고, 지자체 내 종합적 운영관리 컨트롤 타워가 없어 행정의 효율성도 떨어짐.
  - 지자체 내 농공단지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화가 미흡함.
  - 책임감 있는 자리로 여기지 않아 통합적 관리에 대한 인식 부족함.
- 지역의 산업화 시설, 단체, 인력의 활용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이 부재함.



## 다. 개선방향

-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자체적으로 낮은 수준의 운영에 머무르고 있는 지역의 자원과 시설 및 인력을 충분히 활용하여 시스템적인 활용성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지자체가 지역의 활성화에 촉매 역할을 담당해서 외부 기업체의 참여도 유도함으로써 확산을 모색함.
  
- 특화농공단지를 전담하는 부서의 업무역량을 강화함.
  - 특화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자원, 인력, 자본, 기술, 노하우 등을 집결시킬 수 있는 행정체계를 통해 특화농공단지 업무의 효율화 제고
  - 농공단지 전담부서와 농공단지협의회 간 협력을 통해 현장과 밀착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과의 협력 강화
  - 지역 내 농공단지, 지역에 소재한 특화농산물을 활용한 기업, 특화농산물 생산농가와 생산자 단체와 협력 강화 도모. 이를 통하여 네트워크형 협력시스템을 도입하고, 농공단지와 지역특산물간 연계가 강화될 수 있도록 지역의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체계 구축

## 부록 1

---

### 영주시 농공단지 간 연결도로 개설 관련 검토사항

#### 1. 개략 사업연장(도로법 적용시)

- 4차로: 2.8km
- 2차로: 1.0km

#### 2. 대상 행위

- 1) 교통안전진단: 교통안전법 시행령(별표2)
  - 도로법: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3km 이상  
시도, 군도, 구도 1km 이상
- 2)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별표1)
  - 도로법: 연장 2km 이상
- 3) 전략환경영향성검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2)

- 4) 문화재지표조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
- 5) 설계 VE(Value Engineering) : 건설기술관리법 제64조(총공사비 100억 이상)  
기본 설계, 실시 설계시
- 6) 경관심의: 지자체 조례에 따라 시행여부 판단

### 3. 기타

- 1) 인허가
- 2) 지반조사

### 4 주요 협의 대상

- 1) 철도 횡단에 의한 철도시설공단 협의 필요
- 2) 국도28호선 접속에 따른 국도관리사무소 협의 필요
- 3) 지자체 협의

## 부록 2

### 인접도로 개설 설계 및 비용 산정

#### 1. 설계 개요

- 본 계획노선은 적서, 휴천, 문수, 장수농공단지 및 반구전문농공단지를 연결하는 도로로써 주변 도로망(중앙고속도로 영주IC)과의 연계체계를 구축, 교통소통 원활과 이동성 및 접근성 향상, 농공단지 입주자의 편의 제공을 위한 사업이며, 특히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기본방향이 정립되도록 하였음.

검 토 항 목	주 요 검 토 내 용
설 계 기 준	도로의 구분, 설계속도 및 횡단폭원 구성, 기하구조기준 등
노 선 선 정	도로의 교통, 기술, 구조, 환경적 측면을 고려한 노선선정
교 량 계 획	구조, 미관, 시공성, 경제성, 환경적 측면을 고려한 교량의 형식 선정
교차로 계획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상태, 장래계획, 교통 및 사회 경제적, 지형적 여건을 감안한 교차로의 위치 및 형식 선정

## 2. 설계 기준

### 2.1. 개요

- 설계기준은 도로설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으로 도로의 종류 및 등급, 중요도, 교통량, 차종구성, 지형 및 경제성 등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것으로 설계속도, 폭원 구성, 기하구조를 우선 확정하고 세부사항을 결정함.

### 2.2. 도로의 구분

- 도로의 구분은 도로가 제공하는 기능 또는 이용자가 기대하는 기능, 도로가 존재하는 지역 및 지형의 상황과 계획 교통량에 따라 구분함.

#### 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정상의 도로 구분

구 분	도 시 지 역	지 방 지 역	도로법의 분류와 비교
고 속 도 로	도시고속도로	고속도로	고속국도
일 반 도 로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국 도 국도 또는 지방도 지방도 또는 군도 군 도

- 본 노선은 적서, 휴천, 문수, 장수농공단지 및 반구전문농공단지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그 기능 및 역할을 고려하여 지방지역 집산도로로 적용함.

### 3. 배수설계 기준

#### 3.1. 적용범위

- 본 설계기준은 배수구조물 설계에 적용
- 본 설계기준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다음 시설기준 혹은 지침에 의하되 그 인용근거를 표시
  - 하천시설기준 (국토교통부)
  -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 (국토교통부)
  - 1999년도 수자원관리기법개발연구조사 보고서 (국토교통부)
  - 도로배수시설 설계 및 유지관리 지침 (국토교통부)
  - 하수도 시설 기준 (국토교통부)
  - 기타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관련 시방서

#### 3.2. 배수시설의 목적

- 도로의 배수시설은 측구, 도수로, 집수정, 배수관 및 배수암거와 그 부속물로 구성되며, 도로구조의 보전을 확고히 하는데 중요한 시설임. 그러므로 신속한 노면배수와 침투수의 차단, 침투된 물의 지하배수, 도로 인접지로부터의 배수처리를 적절하게 하는 것이 요구됨. 배수시설을 설계함에 있어서는 현지의 상황, 특히 지형, 기상, 지질 등의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공용후의 청소, 보수, 점검 등 유지관리도 고려하였음.

### 3.3. 배수의 구분

○ 도로 배수는 대상 구역별로 다음과 같이 구분함.

- 1) 횡단배수: 도로를 횡단하는 소하천 또는 수로 등을 위한 시설로서 도로 본체의 보존과 도로 인접지의 호우에 대한 피해를 적절히 방지하기 위해 설치(교량, 암거, 배수관)
- 2) 노면배수: 강우 시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노면 및 비탈면에 내린 우수를 원활하게 배수하기 위한 길어깨 및 중앙분리대 등의 표면 배수시설(측구, 배수구, 중분대 집수정, 쌓기부 다이크 등)
- 3) 지하배수: 노반, 노체 등에 침투한 물과 지하수위가 높아져 도로 유지에 위험이 있을 경우 지하수위를 낮추기 위해 설치(유공관, 맹암거 등)
- 4) 비탈면 배수: 비탈면의 배수를 위하여 땅깎기부 및 흩쌓기부에 설치, 비탈면 배수시설, 도수로배수시설, 소단배수시설 등

## 4. 구조물 설계 기준

### 4.1. 적용기준

○ 본 노선에 적용하는 표준시방서 및 설계 기준은 구조물 설계 수행 시 설계 전반에 대한 가능한 한도 내에서의 통일성 및 동일한 구조물 내하수준 유지,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구조물 설계를 도모하고자 설계 적정기준을 설정하여 적용하되, 주요 구조물 설계기준은 다음과 같음.

- 도로교 설계기준 (한국도로교통협회)
- 도로교 표준시방서 (건설교통부)

- 콘크리트 구조기준 (한국콘크리트학회)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 도로설계편람 (국토교통부)
  - 도로설계요령 (한국도로공사)
  -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국토교통부)
  - 하천 설계기준 (수자원학회)
  -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 (국토교통부)
- 본 설계기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기의 시방서 혹은 지침에 의하되 그 인용근거를 명시하도록 함.

## 4.2. 형하공간(통과높이)

- 설계구간의 구조물 횡단 여건에 따른 소요 형하공간은 다음을 기준으로 함.

### 1) 도 로

- 국도: 4.5m 이상 (동계 적설, 포장 덧쌓우기로 가급적 4.7m이상)
- 농로: 4.5m 이상 (단순 농로는 현지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 2) 하 천

- 하천을 횡단하는 경우에는 계획 홍수량에 따라 기준으로 하되, 하상변동에 의한 수위 상승과 만곡부의 수위 상승, 수리계산 오차 등을 고려하여 제방 여유고 이상을 확보함.



### 4.3. 설계하중

- 강도설계법에 의할 때는 계수하중을 적용하고 허용력 설계법에 의할 때는 사용하중을 적용해야하며, 구조계산 하중조합은 사하중, 활하중, 충격, 건조수축, 크리프, 온도변화, 지진 및 지지점의 부등침하 등의 영향을 고려한 하중조합 중 가장 불리한 하중으로 설계하였음.

### 4.4. 설계방법

#### 1) 적용설계방법

- (가) 구조물의 설계는 일반적으로 구조해석과 단면계산의 순서로 이루어짐. 즉, 하중작용이 구조물에 일으키는 응력과 변형을 구조해석에 의해서 알아내고, 이렇게 해서 알아낸 응력과 변형에 대하여 부재단면의 안전을 검토하여, 주어진 하중작용에 대해 안정하고 경제적인 단면을 결정하는 것이 설계의 일반적인 절차임.
- (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설계방법은 강도설계법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강구조물,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가설구조물, 기타 허용응력설계법이 보다 타당한 경우는 허용응력설계법에 따름.
- (다) 이때 강도설계법에 따르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은 처짐, 균열 등을 고려한 사용성도 확보하여야 하며, 반대로 허용응력설계법에 따르는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등은 극한 상태에서 강도의 안전도를 검토하였음.

## 5. 터널설계 기준

- 터널설계는 넓은 의미에서 기본요소의 결정, 단면 설계, 지보 구조 설계, 굴착 방법 및 공법 결정, 시공을 위한 가설비 설계, 터널 내·외부의 부대시설 설계 등의 과정을 진행함. 여기서 터널 상세 설계는 시공 중 막장 관찰 및 계측결과 분석 등에 의해 수정·보완되어야 하는 사전설계의 의미를 가짐. 사전설계의 역할은 공사 발주를 위해서 가능한 한 정확한 공사기간과 공사비의 목표를 얻는 것이며, 시공 단계에서 지보 및 시공법에 큰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정밀도나 신뢰도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6. 도로의 횡단구성

- 도로폭원의 결정에 있어서는 계획목표년도의 교통수요와 요구되는 계획수준에 적응할 수 있는 교통처리 능력을 가져야 하며, 교통의 안전성과 쾌적성 등 경제적인 검토를 하여야 함.

### 6.1. 차로

- 차로의 폭은 차량의 물리적 폭에 엇갈림, 추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여유 폭을 더한 값으로 정의되며 그 값은 주행속도와 교통용량의 영향요소인 대형차 혼입율에 따라 변하게 됨.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2012.2)』에는 지방지역 설계속도 50km/hr 이상의 도로에 대해서는 차로 폭을 3.0m로 규정하였으나, 도로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본선 차로 폭을 3.25m로 적용하였음.

## 6.2. 중앙분리대

### 가. 중앙분리대 폭원

- 중앙분리대는 왕복의 교통류를 분리하여 대향 차로에서의 이탈에 의한 치명적인 사고를 방지함과 동시에 도로 중심선축의 교통저항을 감소시켜 교통용량을 증대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음.
- 본 노선은 집산도로이며 농공단지 연결도로임을 감안하여 중분대 기능과 효과 등을 고려하여 중분대 가드레일 형식을 선정하였고 중분대 폭원은 1.5(4차로)m를 적용하였음.

## 7. 노선 선정 방법 및 사업비

- 본 노선은 농공단지와 고속도로(영주IC)의 접근성으로 기업경쟁력 및 지역 경제 발전등의 목적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갖는 도로임.
- 각 검토 안별 검토에 의한 최적의 확장 계획을 선정함.
- 관련 상위계획 등 주변 관련계획에 부합되는 장기적인 도로기능의 확보
- 노선의 성격과 기능을 고려한 주요 지점별 접속성 및 이동성의 확보
- 지형여건을 고려한 지장물 간섭과 시공성 및 경제성 고려
- 환경 친화적인 도로의 개설

### 7.1. 개요

- 본 노선은 적서, 휴천, 문수, 장수농공단지 및 반구전문농공단지를 연결하는 도로로써 주변 도로망(중앙고속도로 영주IC)과의 연계 접속하는 등 기타 제반 사항을 고려한 노선을 검토하고자 함.

## 7.2. 노선 검토 및 사업비

구 분		1안	2안	
개 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북선(철도) 교량으로 횡단</li> <li>영주휴천, 적서농공단지 교차로에 접속(4차로, 2차로노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북선(철도) 덕암터널로 교차</li> <li>영주휴천, 적서농공단지 교차로에 접속(4차로 노선)</li> <li>2차로노선은 4차로노선에 접속</li> </ul>	
검토연장		4.4km(4차로:2.5km, 2차로:1.9km)	4.1km(4차로:2.8km, 2차로:1.3km)	
평면선형	R<700	1,761m	2,152m	
	700≤R	642m	268m	
	직 선	2,013m	1,673m	
	최소곡선반경	250m	250m	
종단선형	S≤2	1,650m	235m	
	2<S≤5	2,767m	3,858m	
	5<S	-	-	
	최대종단경사	5%	5%	
주요공사량	토 공	꺾기	269천 원	252천 원
		쌓기	325천 원	208천 원
	교 량		120m/1개소	-
	터 널		740m/2개소	960m/2개소
총공사비		599억 원(549억 원)	629억 원(564억 원)	
장·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북선철도 교량(L=120m)횡단에 따른 철도시설공단 협의 필요</li> <li>영주휴천, 적서농공단지 통합 접속으로 교차로 최소화(3개소)</li> <li>백련사(사찰)로부터 50m이격으로 민원 최소화</li> <li>공사비 다소 저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북선철도 덕암터널 교차통과(H=14m)에 따른 철도시설공단 협의 필요</li> <li>교차로4개소 설치</li> <li>터널과 교차로 근접(L=140m) 접속</li> <li>민원발생 배제</li> <li>공사비 보통</li> </ul>	
검토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안은 1안 대비 전체 연장이 다소 짧으나(0.3km), 4차로구간(L=2.8km)과 터널연장(L=0.96km)이 다소 길어 공사비는 보통.</li> <li>4차로구간(L=2.5km)과 터널연장(L=0.74km) 최소화로 공사비가 다소 저렴한 1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됨.</li> </ul>		

※( ): 병설터널 적용 시

## 부록 3

---

#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사업지침

## I. 사업개요

### 1. 목 적

-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1차·2차·3차 복합산업화를 촉진하고 창업 및 기업유치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의 경제활동 다각화와 소득·고용기회 증대를 도모
- 농촌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주체 양성, 지역발전체계(RIS) 구축, 지역 부존 자원의 발굴 및 산업화에 필요한 지역 R&D 기반 구축
- 농산업, 향토식품·특산물 가공 등 농촌형 제조업 육성 및 기업투자 유치, 농촌 체험·휴양서비스 및 도·농교류 활성화 기반 구축

## 2. 근거법령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6조
- 농어업·농어촌 식품산업 기본법 제51조, 제52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제35조, 제38조
- 농어촌정비법 제73조, 제74조, 제77조, 78조
  - \* 포괄보조사업 5개년계획에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를 농어촌산업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인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2조
- 식품산업진흥법 제3조

## 3. 성과목표 및 지표

단위: 억 원, 명, 개소

성과지표	2013년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1	'12	'13		
▪ 참여업체 매출액 증가율(%)	28.4	26.2	28.1		'14.1월	▪ 지자체 행정조사
▪ 일자리 증가율(%)	34.2	-	34.2			

####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 원

구 분	2011년까지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이후
합 계	958,114	406,190	421,120	352,586	계속
국비보조	479,057	203,095	210,560	176,293	계속
지방비· 자부담	479,057	203,095	210,560	176,293	계속

\*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은 시·도 자율사업(포괄보조)으로 시·도 예산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므로 '15년 이후 재정투입계획 예측이 어려움

\* 2013년 이후는 해양수산부 소관 미포함

## II.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 1.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 농업인 조직, 생산자단체, 농축산물가공업체, 시장·군수·구청장, 연구단체 등
- 특혜 시비 방지 등을 위해 가공업체 등에 대한 시설비 지원은 시·도 또는 시·군·구별 자체기준에 따라 공모방식 등으로 선정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제조업(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원 이하)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지원
- 사업주관: 시·도지사
- 시행기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 농공단지 조성: 특별·광역시, 수도권 지역 시·군·구 제외(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의함)

##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 조직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 지원(등록할 정보가 없는 유통·가공법인 제외)
- 작목반 등 비법인이 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작목반 등 비법인의 운영실적과 법인의 총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일 것  
\* 법인이 아닌 제조·가공업체 등의 경우에도 총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일 것

## 3. 지원대상

- 농촌 산업주체 역량강화 및 혁신체계 구축
  - 농촌 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RIS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원
  - 농업인, 소상공인, 마을주민 대상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 농축산물 공동마케팅 조직 구축 프로그램 개발·운영
  - 소규모 창업 교육 및 창업기업보육 지원
  -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지역리더 양성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 R&D 및 컨설팅 등 지원 강화
  - 농촌 자원 산업화와 관련된 대학·민간 연구소 등의 R&D네트워크 구축 지원
  - 향토 자원 발굴 및 산업화 방안 연구 등
  - 지리적 표시, 상품 특허 등 지적재산권 획득 지원 등
  - 우수 향토기업의 상품 개발 및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R&D·컨설팅 지원
- 농촌자원복합산업화를 위한 생산·유통 기반 구축
  - 복합산업화와 연계하여 지역 농업 생산·유통 혁신 및 효율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 향토자원 활용형 제조가공업체·식품업체의 설비 현대화 등 지원



- 로컬푸드 등 지역 농축산물·식품 소비기반 확충 프로그램 지원
- 향토 상품 수출 및 마케팅
  - 농촌 기업 유치 및 향토기업 집적화 기반 조성
    - 특화농공단지 부지 조성 및 노후농공단지 시설 개·보수 지원
    - 농공단지 입주기업 대상 기술정보·마케팅 지원프로그램 운영 등
  - 농촌형 체험·휴양 비즈니스 기반 구축
    - 체험·휴양마을 조성 및 체험휴양 프로그램 운영
    - 농촌테마공원 등 거점 체험·휴양기반 구축
    - 지역단위 체험·휴양 패키지 프로그램 개발 및 마케팅
    - 농촌 관광·프로그램 전문가 육성 및 전문가 컨설팅 지원

####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지원자금은 사업유형별 가이드라인에서 별도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

##### < 지원제외 대상 사업 >

- 법령에 의한 지원제외 사업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36조 별표2 지원제외사업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 1의 2 지방자치사무로 전환된 사업
-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 지방자치단체 이관사업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 분야 이외 재원으로 추진되는 타 정책사업과 중복되는 세부사업

< 지원제외 대상 사업 >

- 농정 추진방향에 부합하지 않거나 지원이 적절하지 않은 사업
  - 과잉생산으로 문제가 되거나, FTA기금으로 폐원 보상하는 농산물의 재배면적 확대 또는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사업
  - 비료·농약·사료·종자대 등 농가단위 소모성 투입재 지원사업
  - 개별 농가단위 시설 설치 및 장비구입비 지원사업
  - 손실보전 지원사업 등
- 부지 확보, 각종 영향평가,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등 사전이행 절차 미이행 사업
  - 시·군은 관련법령에 따른 행정절차가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 (농공단지 지정, 농촌테마공원조성 등)은 사업신청 전 행정절차 이행 (행정절차 미이행 사업은 사업신청 불가)
  - \* 기본계획수립(농어촌정비법 등 사업시행관련 법령),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정책기본법), 문화재 지표조사(문화재보호법 등)
- 지방재정법 제37조 등 관계 규정에 의거 예비 타당성 조사 및 사업성 검토 결과 타당성이 없는 사업
- 사업과 관련 없는 경상적 경비 (업무추진비, 여비, 수용비 등), 행사 홍보비, 조형물 설치비, 기관·단체 운영비, 개인의 해외 연수비 등은 동 포괄보조사업의 예산으로 신청 불가
- 토지의 구입비(농공단지 사업 및 농촌테마공원조성 사업은 제외), 건물의 매입 또는 임차, 사업목적과 관련 없는 음식점 숙박시설 설치 등은 동 포괄보조사업의 예산으로 신청 불가

##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재 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 지원기준: 국비 50%, 지방비 50%(자부담 포함)
  - 세부 내역사업별로 사업의 공공성·형평성, 사업자의 책임 확보, 특혜 시비 배제 등 여건을 고려하여 자부담률 결정
  - 다만,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른 농공단지 부지조성비 지원 사업(농공단지조성사업)은 정액 지원
- 사업기간: 총사업비가 10억 원 이상인 생산·유통·제조·가공시설 설치사업은 2~3개년 사업으로 추진(단년도 사업 추진 지양)
  - \* 시·도 및 시·군·구는 2년차 이후 사업비는 예산 편성 시 우선 반영하여야 함

##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 등은 사업유형별 가이드라인 참조

## 7. 포괄보조사업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 포괄보조사업 시행 전 계속사업\*은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의 시행지침을 적용
  - \* 계속사업: 지구별 사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사업

###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1. 사업신청단계

##### 사업신청자

- 농업인 조직, 생산자단체, 농축산물가공업체 등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이 정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업 신청(1.20일까지)

##### 시·도, 시·군·구(지자체)

- 시·군·구는 포괄보조사업 5개년계획상의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대상으로 예산신청(사업계획과 다른 예산 신청은 자제)
  - ※ 총 사업비가 30억 원 이상 투자되는 토목·건축사업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전 사업성 검토를 받아야 함
  - ※ 개별 법령 등에 따라 세부내역사업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는 별도로 해당 사업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시·도는 시·군의 예산신청 수요 등을 감안, 농림축산식품부에 예산 신청 (5.31일까지)
  - ※ 시·군에서는 타 사업의 세부사업과의 중복여부를 반드시 검토하고, 그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도에 사업을 신청하여야 함
  - ※ 시·도에서는 시·군의 검토의견서 첨부 여부를 확인하고, 검토의견서 적정 여부를 평가하여 중복되는 사업은 신청을 제외하여야 함

## 2. 사업자 선정단계

### 시·도, 시·군·구(지자체)

- 시·군·구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자체 심의를 거쳐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보고
- 시·도 선정사업 중 시·군·구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은 시·도가 심의를 거쳐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선정결과를 관할 시·군·구에 통보
- 시·도 또는 시·군·구는 보조사업자를 정하는 경우 원칙적 공모제를 활용(공모기간 10일 이상)
  - 시설설치 지원대상자로 가공업체 등을 선정하는 경우 시·도 또는 시·군·구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 및 지역 내 농축산물(주원료) 매입실적, 경영실적·채무구조 건전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동 기준에 따라 공모방식 등으로 사업대상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 선정시 주원료를 지역 내에서 매입하는 우수한 업체 및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관리시설 요건을 갖추고 있거나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 갖출 계획인 업체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 지역행복생활권 계획에 포함된 사업 또는 지자체간 연계된 사업인 경우 우선 선정
  -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운용측면에서 동일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 종료 후 3년 이내에 추가지원 제한

###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시·도, 시·군·구(지자체)

- 시·도 또는 시·군·구는 세부내역 사업별로 세부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되, 세부사업시행계획은 시·군별 포괄보조사업(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사업계획에는 지자체 간 연계사업을 포함할 수 있음
- 세부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주민·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
- 시·도별 내역사업(붙임 유형별 가이드라인상의 7개 사업유형 중 감액변경되는 내역사업 기준) 금액의 20%이상 변경되는 경우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 후 변경하여야 함
  - 시·도는 계획변경 내용과 사유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시·도 자체변경의 경우에도 변경결과 제출)
- 시·도 또는 시·군·구는 보조사업자가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보조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타당한 경우 변경 승인을 하여야 함
  - 사업계획의 변경은 시·군·구에서 승인하되, 시·도가 정하는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시·도가 승인함
  - ※ 중요사항: 보조 사업자 변경, 사업비·사업규모(면적 등)의 일정 비율 이상의 변경 등

###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도로부터 내역사업의 변경 요구를 받은 경우 이를 검토한 후, 시·도에 의견을 통보  
(시·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의견을 반영)

## 4. 자금배정단계

### 농림축산식품부

- 각 시·도의 분기별 자금수요를 파악, 분기별 자금배정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 자금 배정(시·도는 세부내역사업별로 자금수요를 파악한 후, 세부내역사업별 자금소요 집계표와 같이 자금배정 요구, 서식 별도 통보)

### 시·도, 시·군·구(지자체)

- 시·도는 분기별 배정된 국비와 함께 지방비를 포함하여 시·군에 자금을 배정하고, 시·군·구는 분기별 배정된 자금을 사업완료 후 검정, 정산
- 시·도 및 시·군·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관리사업 기본규정」 등에 따른 집행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금교부결정을 하는 시·도 또는 시·군·구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관리사업 기본규정」에서 정하는 보조금교부조건 부여사항을 포함하여 수급자에게 보조금교부결정 조건을 부여

## 5. 이행점검단계

### 〈사후관리〉

#### 시·도, 시·군·구(지자체)

- 시·도 및 시·군·구는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화 방지 및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해 총괄부서와 세부사업부서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시·도 및 시·군·구는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부진 또는 부실사업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시도는 분기별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여야 함(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에는 세부내역사업의 추진실적과 자금집행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작성)
- 시·도 또는 시·군·구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자재 등에 대해서는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7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시·군·구는 사업완료 후 3년간 보조사업자의 매출액 등 경영실적을 점검하여야 함
- 시·군·구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관리기간 중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부터	까지	
▪ 건물 및 부속설비	준공일	10년간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 주요 기계·장비	구입일	5년간	

\* 내구연한이 5년 미만인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사후관리기간으로 함

\*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규정에 따라 관리

- 시·군·구는 중요재산 현황을 해당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항상 공시하여야 함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분기별 1회)
- 사업별 집행실적, 세부내역사업별 추진상황, 현장애로 사항 등 점검
- 사업성과 달성을 위해 모니터링·컨설팅 등 측면지원 실시
- 모니터링 결과 필요시 세부사업내용의 수정 등을 지자체에 권고

**<제재 및 처벌내용>**

**시·도, 시·군·구(지자체)**

- 시·도 또는 시·군·구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법령에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를 받았을 경우
- 사업취소·자금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도 및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6. 성과측정단계

-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의 추진실적은 일자리 창출·농어촌기업 매출액·참여농가 소득증가 등 경제성과와 주민교육이수실적 등 지역역량강화 성과 등으로 측정

##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평가〉

#### 농림축산식품부

- 지역발전위원회의 지역발전사업 평가계획에 따라 부처 자체평가 실시

#### 시·도, 시·군·구(지자체)

- 시·도는 지역발전위원회의 지역발전사업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자료(지자체별 사업추진실적 보고서 등) 제출(REDIS: 지역발전종합정보시스템)

#### 농림축산식품부

- 지역발전위원회의 지역발전사업 평가계획에 따라 시·도에서 REDIS에 제출한 평가자료에 기초하여 부처 자체평가평가를 실시

### 〈환 류〉

-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지자체별 또는 사업별로 인센티브(예산 추가지원) 및 페널티(예산 삭감) 등 부여
- 모니터링, 성과평가 및 집행실태 파악을 통해 제도개선 등을 추진

## IV. 2015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1. 2015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도 및 시·군·구는 포괄보조사업(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5개년계획에 기초하여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에 필요한 세부사업 수요를 파악하되, 지자체별 실정에 맞게 세부사업을 발굴 또는 선택(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선택과 집중 전략 등이 필요)

### 2. 2015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 시·도, 시·군·구에서 별도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사업신청
  - \* 이 사업은 시·도 자율사업으로 지자체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체계임
- 총사업비가 30억원 이상 투자되는 토목·건축사업의 경우 '14.3.20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전 사업성 검토 신청
  - \* 사전 사업성 검토를 받지 않은 사업은 예산신청 불가
- 시·도 및 시·군은 포괄보조사업(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5개년계획에 적합한 세부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신청하고 지원대상자를 선정

### 3. 기타 유의사항

- 시·군·구는 관련법령에 따른 행정절차가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농공단지 지정,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 등)은 사업신청 전(前) 행정절차 이행(행정절차 미이행 사업은 사업신청 불가)
  - 기본계획수립(농어촌정비법 등 사업시행 관련 법령), 사전 환경성검토(환경정책기본법), 문화재지표조사(문화재보호법) 등
- 시·도 및 시·군·구는 농축산물 생산지원 사업의 경우 2·3차 산업과 연관하여 지원되도록 방안을 강구

첨부

## 사업유형별 집행 가이드라인

- 이 가이드라인은 사업유형별 지원 조건이나 지원 내용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추진 형태를 제시하기 위한 것임
- 따라서,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을 5개의 산업화 지원 방식으로 구분, 7개의 사업유형을 제시한 것으로서
  - 각각의 유형별 사업 외에 여러개의 유형이 혼합된 사업의 추진은 물론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의 목적, 추진방향 등에 부합될 경우에는 동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지 않은 유형의 사업 추진도 가능
  - \* 다만, 예산편성 및 집행시에는 7개 유형 중 1개 유형으로 분류(비중이 가장 크거나 유사한 성격의 유형으로 분류)

## 농촌 산업화 추진 지원체계 구축지원

## ① (사업유형 1) 시·도 단위 농촌산업화 기획·평가체계 구축

- 사업내용
  - 지자체에 대한 자율성 확대에 상응하는 사업추진 역량의 제고와 사업비 집행의 책임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도단위 농촌산업화 기획·평가·컨설팅·모니터링을 위한 체계를 구축, 다음 역할 수행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모델(모형)의 개발·보급
  - 시·군의 신청사업에 대한 사업성 검토 및 선정을 위한 심사·평가단 운영 및 전문기관 업무위탁
  - 시·군의 사업별 추진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위한 지원단 운영 및 전문기관 업무위탁
  - 시·군의 사업별 추진실적(성과) 평가를 위한 평가단 운영 및 전문기관 업무위탁 등
- 지원내용: 연구·용역비, 인적 네트워크 및 시스템 구축비, 심사·평가·컨설팅·모니터링 비용 등

## 유통·제조·가공 중심의 산업화 지원

### ② (사업유형 2) 농축산물 생산·유통 기반구축 지원

#### ○ 사업내용

- 생산된 농축산물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제조·가공 등 전(前) 단계에 필요한 공동 생산·보관·유통시설 지원(제조·가공 등과 연계하여 지원)
- 생산·유통 기반구축과 관련된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역리더양성 교육프로그램 등 역량강화, 생산 및 유통관련 혁신을 위한 기술개발, 지리적 표시등록 등 지원
- 사업추진단 운영비(생산·유통·제조·가공·체험·전시시설과 S/W사업이 복합화 되어 사업추진단 구성·운영이 필요한 경우 지원 가능)

#### ○ 지원부문: 생산·유통 시설비, 생산·유통기반구축을 위한 운영비

#### ○ 지원내용

- S/W사업비는 생산·유통시설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지원가능, 사업규모에 비해 과도한 S/W 지원은 제한

#### ○ 지원기준: 생산·유통 시설비는 보조사업자당 10억원까지 국비 지원(국비 50%, 지방비·자부담 50%)

- \* 사업비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하고,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지원한도 미 설정

### ③ (사업유형 3) 농축산물 제조·가공 지원

#### ○ 사업내용

- 농축산물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향토자원 활용형 제조·가공업체 및 식품산업체의 제조·가공 등 시설 및 설비 지원
- 제조·가공 등과 관련된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역리더양성 교육프로그램 등 역량강화, 대학·연구 등의 R&D네트워크 구축, 지리적 표시, 상품 개발 및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R&D 및 컨설팅, 상품 특허 등 지적재산권 획득 지원(지적재산권 구입비는 지원 제외)

- 사업추진단 운영비(생산·유통·제조·가공·체험·전시 시설과 S/W사업이 복합화되어 사업추진단 구성·운영이 필요한 경우 지원 가능)
- 지원내용: 제조·가공 등 시설 및 설비, 연구개발비, 지적재산권 출원비용, 컨설팅 비용, 사업추진단 운영비 등
  - S/W사업비는 제조·가공 등 시설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지원가능, 사업규모에 비해 과도한 S/W 지원은 제한
- 지원기준: 제조·가공 시설 및 설비는 보조사업자당 10억원까지 국비 지원 (국비 50%, 지방비·자부담 50%)
  - \* 사업비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하고,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지원한도 미 설정

#### ④ (사업유형 4) 농축산물 등 체험·전시 지원

- 사업내용
  - 생산된 농축산물 또는 제품의 홍보·체험 등을 위한 소규모(총사업비 규모 5억원 미만) 체험·전시시설, 공동판매장 시설 지원(생산 또는 제조·가공 등과 연계하여 지원)
    - \* 공동판매장은 농축산물 또는 제조상품의 생산자들이 자기들이 생산한 물품을 공동으로 판매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임
  - 체험·전시와 관련된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역리더양성 교육프로그램 등 역량강화, 대학·연구 등의 R&D네트워크 구축,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박람회 참가 등 홍보전시 및 컨설팅, 상품 특허 등 지적재산권 획득 지원 (지적재산권 구입비는 지원 제외)
  - 사업추진단 운영비(생산·유통·제조·가공·체험·전시 시설과 S/W사업이 복합화 되어 사업추진단 구성·운영이 필요한 경우 지원 가능)
- 지원내용: 홍보·체험 시설비, 연구개발비, 지적재산권 출원비용, 박람회 참가 비용, 컨설팅 비용, 사업추진단 운영비 등

<b>체험·관광 중심의 산업화 지원</b>
-------------------------

### ⑤ (사업유형 5) 농촌체험·관광 지원

#### ㉠ 농촌 테마공원 조성

##### ○ 사업내용

- 테마공원의 기반시설, 체험·휴양시설 지원
- 경관시설·진입도로·상하수도·화장실 등과 같은 기반시설
- 학습전시관·산책로·탐방로·주말농원 등과 같은 체험·휴양시설

##### ○ 지원내용: 시설비

- 기반시설: 생태공원, 경관시설, 진입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 공중화장실, 관리실, 무료 편의시설 등
- 체험·휴양시설: 학습전시관, 산책로, 탐방로, 공연장, 주말농원 등
- 진입도로 부지매입비(지원 시설비\*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 계획수립비(기본조사비 등 기본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군·구 자체사업으로 추진)

\* 지원 시설비: 기반시설비 + 체험·휴양시설 + 진입도로 부지매입비

※ 위락시설(사격장, 수영장, 승마장, 궁도장, 썰매장, 놀이시설, 극기 훈련장, 관광·유람시설, 찜질방, 피크닉장 등), 판매시설(판매장, 기념품점, 매점 등), 음식점, 카페, 펜션·방갈로·야영장 등 숙박시설은 민자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추진

##### ○ 지원기준: 3~5년간 지구당 50억 원까지 국비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시·군·구 당 1개 지구 지원

\* 단, 지방비 및 민자는 추가 부담 가능



##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산업화 지원

### ⑥ (사업유형 6) 특화농공단지 조성 및 노후단지 개·보수 지원

#### ○ 사업내용

- 농공단지 부지조성(신규 또는 계속지구) 및 노후단지 시설 개·보수 지원
  - \* 부지조성비는 '13년부터 특화농공단지 조성만 지원(일반 및 전문 농공단지 국비 지원 제외)
- 농공단지 입주기업 대상 기술정보·마케팅 지원프로그램 운영 등

#### ○ 지원내용

- 농공단지 부지조성비: 용지취득비, 단지시공비, 진입로·전력·통신·용수 등 부대시설비
- 단지내 공동이용시설, 부대시설 등 노후화 시설물 개·보수비: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13조 제2항 별표 2의 지원시설 중 노후화되어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
- 농공단지 입주기업 대상 기술·마케팅 관련 교육 및 컨설팅 비용

#### ○ 지원기준

-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른 농공단지 부지조성비는 정액지원(단지면적 3.3㎡당 30~70천원)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1차·2차·3차 융·복합 산업화 지원
----------------------

⑦ (사업유형 7) 생산·유통·제조·가공·체험·관광 등 6차산업화 지원

○ 사업내용

- 생산·유통·제조·가공·체험·전시·관광 등 1차·2차·3차 산업을 연계한 패키지 형태의 관련 시설 지원
- 생산·유통·제조·가공·체험·전시·관광 등과 관련된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역리더양성 교육프로그램 등 역량강화, 관련 혁신을 위한 기술개발, 지리적 표시등록 등 지원
- 사업추진단 운영비(생산·유통·제조·가공·체험·전시시설과 S/W사업이 복합화 되어 사업추진단 구성·운영이 필요한 경우 지원 가능)

○ 지원부문: 시설비, 운영비

○ 지원내용

- S/W사업비는 생산·유통·제조·가공·체험·전시·관광 등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지원가능, 사업규모에 비해 과도한 S/W 지원은 제한

## 부록 4

###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관련 설문조사표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정책을 연구하여 정부의 정책 수행에 기여하고 있는 정부출연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의뢰로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평소 귀하께서 농공단지 업무를 담당하시면서 느끼셨던 애로사항이나 당면 문제 등 농공단지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본 설문조사의 결과는 연구의 기초자료로만 활용될 것이며, 통계법 제 33조에 의거하여 모든 조사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립니다.

2014년 1월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촌경제연구원

	단지명				성명			
조사표 작성자	전화	직장	(    )	-	핸드폰	-	-	
	주소	사·도			사·군	읍면동		리
	이메일							

**I. 농공단지의 일반적 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 또는 기입해주세요**

문 1. 농공단지의 입주업체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2013년 기준).

단지 유형 ( )	총 업체수	정상 가동	부분 가동	휴업	폐업
① 일반 ② 특화 ③ 전문	개	개	개	개	개

문 2. 농공단지의 운영 상태는 어떠합니까? ( )

- ① 매우 침체 ② 다소 침체 ③ 보통 ④ 다소 원활 ⑤ 매우 원활

문 3. 농공단지의 운영업체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은 무엇입니까? ( )

- ① 농산물 가공업 ② 수산물 가공업 ③ 일반 제조업 ④기타( )

**II. 특화농공단지의 인식정도 등에 대한 질문입니다. (○) 또는 기입해주세요**

문 4. 특화농공단지에 대해 귀하는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 )

- ① 모름 ② 들어는 봤음 ③ 조금 알고 있음 ④ 잘 알고 있음

· 농공단지(農工團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특화농공단지: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을 위해 지역특화업종(향토산업 포함) 비중이 업체 수와 면적기준으로 80% 이상의 단지

문 5. 특화농공단지의 기준에서 지역특화업종의 비중이 80%라는 규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 ① 비중 인상 ⇨ 문6으로                      ② 현행 유지 ⇨ 문6으로  
 ③ 비중 인하 ⇨ 문5-1로                      ④ 기타(구체적으로: )

문 5-1. (※문 5에서 ③ 응답자만) 특화농공단지의 동일 업종 기준이 완화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선 순서대로 2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_\_\_), (2순위:\_\_\_)

- ① 현실적 여건 고려(현실성 결여)    ② 관련업종간 파급효과 극대화  
 ③ 개별 경영의 비용 절감            ④ 제조업 등 인력수급 편리  
 ⑤ 단지의 경쟁력 강화                ⑥ 기타(\_\_\_\_\_)

문 6. 만약 특화농공단지의 업종 비중을 인하한다면, 어느 정도 낮추면 좋겠습니까?

- ① 50% 미만            ② 50~60% 미만 ③ 60~70% 미만 ④ 70~80% 미만

문 7. 귀하가 담당하는 농공단지는 특화농공단지로 전환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_\_\_)

- ① 있다            ② 없다            ③ 기타(\_\_\_\_\_)

문 8. 현 농공단지를 특화농공단지로 변경할 경우 필요한 조치는 무엇이 있습니까?

조치 사항

### Ⅲ. 농공단지 및 특화농공단지 관리 부처에 대한 의견입니다.

- 문 9.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여러 부처에서 고유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현재 운영 등 종합적인 관리를 위한 창구의 일원화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 ① 창구 일원화 지정    ② 현행 그대로    ③ 기타( :\_\_\_\_\_ )

- 문 10. 농공단지의 운영과 관련하여 창구를 일원화 한다면, 어느 부처에서 담당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
- ① 농림축산식품부    ② 국토교통부    ③ 산업통상자원부  
④ 기획재정부    ⑤ 환경부    ⑥ 기타( :\_\_\_\_\_ )

- 문 11. 농공단지의 관리주체가 기초지자체(시장·군수·구청장)로 변경된 후 농공단지 발전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 )
- ① 전혀 도움 안됨    ② 다소 도움 안됨    ③ 변화 없음  
④ 다소 도움    ⑤ 매우 도움

### Ⅳ. 농공(특화)단지의 활성화와 6차산업화 연계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 문 12.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단지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습니까? ( )
- ① 제조 + 물류 + 체험 + 서비스 등 융·복합화  
② 전문화된 산업단지(동일업종의 집적화)  
③ 기존 농공단지 운영방안 유지  
④ 기타( :\_\_\_\_\_ )

- 문 13. 농공단지의 지정과 운영에서 가장 필요한 조치는 무엇입니까? 우선 순서대로 2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 ① 현행 그대로 유지

- ② 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전심의 및 계획수립 등 농공단지 계획제도 도입
- ③ 산학연 등 협력 클러스터화 등에 인센티브 확대 지원
- ④ 기존 단지의 특화단지 변경에 대한 지원
- ⑤ 단지 운영협의체의 중간지원조직화에 대한 지원
- ⑥ 기타(\_\_\_\_\_)

문 14.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중앙정부	지방정부
①		
②		
③		

## 참고 문헌

- 국민권익위원회. 2010. “농공단지 입주기업 고충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 국회에산정책처. 2009. 「지역전략산업 육성 사업 평가」. 국회.
- 국회에산정책처. 2010. 「지역특화발전특구사업 평가」. 국회.
- 김선배 외. 2010. 「지역산업정책과의 연계를 통한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D29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영수 등. 2007. 지역산업정책 10년의 성과와 과제-지역산업진흥사업을 중심으로. 산업연구원.
- 김용렬 등. 2012. 「농어촌산업화 정책 성과평가 및 향후 발전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용렬 등. 2012. 「농촌산업 고도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용렬 등. 2010.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지원 실효성 확보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용렬 등. 2011. 「일본의 농공상 연대 제도 안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용렬 등. 2011. 「일본의 농산어촌 6차산업화 제도 안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용렬. 2011. 「지역단위의 농공상 연대방안과 확대 가능성」.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태곤 등. 2011. 「농업의 6차산업화와 부가가치 창출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림부. 2005. 「농공단지 사업의 평가 및 운영개선 방안 연구」.
- (사)한국농공단지연합회 전남협의회. 2011. 「2011 전남농공단지 경쟁력강화 워크숍」 자료집.
- 산업연구원. 2010. 「기업활동 관련 입지규제 완화 개선방안 연구」.
- 서종혁, 이동필, 조혁중. 1986. 「농촌공업과 농공지구 개발의 효율적인 추진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동필. 1986. “농촌공업의 규모, 성격 및 성장분석.” 「농촌경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동필. 2009.2. “농공단지 개발정책의 성과와 과제.” 「국토」 통권 328호. 국토연구원.
- 이동필 외. 2008. 「농어촌산업정책 추진체계 개편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동필, 김경덕. 1987. 「농어촌 부업단지 육성 사업의 평가와 대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동필 외(a). 2010. 「경제·생활권 광역화에 따른 농어촌 경제 활성화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동필 외(b). 2010. 「일본의 지역 활성화 관련 정책과 사례」 D29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동필 등. 2007.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평가·성과측정을 위한 지표개발 및 향토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 방안·평가지표 개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동필 등. 1994. 「전통가공식품육성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동필 등. 1995. 「농촌지역 2·3차산업 활성화 방안」. 전국경제인연합회.
- 이동필 등. 1996. 「농어촌지역의 유형구분과 농공단지개발사업의 활성화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동필 등. 1997. 「농어촌부업단지 실태와 활성화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동필 등. 2004. 「도농간 소득 및 발전격차의 실태와 원인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동필 등. 2006. 「농어촌지역개발·복지분야지원체계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기획예산처·농림부.
- 이동필. 2007. “향토산업의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제2기 신활력사업 추진방향 및 향토산업육성사업 교육 교재」. 국가균형발전위원회·농림부.
- 임동환. 2007.9. “농공단지 지원정책의 성과와 개선방안.” 「산업입지」 제 27호(2007년 가을).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입지연구센터.
- 임동환. 2009.5. “농산병행정책에 의한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공단지 선진화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연구」 제11권 제1호.
- 임창영 외. 2008. 「농촌정책변화에 따른 농촌개발촉진을 위한 법령체계 정비방안 연구」. 농림수산식품부·농어촌공사.
- 지식경제부·한국산업단지공단. 각 연도.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
- 지식경제부·한국산업단지공단. 2011.12.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 국가·일반·도시첨단·농공단지」.
- 최경환. 2001. “농공단지 개발사업의 평가와 개선방향.” 「농촌경제」 24(2): 119-13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최경환, 김용렬, 윤병석. 2012.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최양부, 이동필. 1984. 「농공지구 개발의 방향과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0. 「농식품산업특구제도의 법제화 방안 및 타당성 연구」.
-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입지연구센터. 2009. 「노후공업지역의 재정비제도 개선방안 연구」.

